

I. 序論

傳統的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停態的인 農耕社會에서는 私人間의 다툼을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生産物의 瑕疵 및 缺陷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의 감내로써 마무리됐고 그러한 爭訟을 다루는 배상책임법리는 미분화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工業化, 産業化, 都市化에 따라 生産物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나 이용자 등 제3자의 신체장해(bodily injury), 재산상의 피해(property damages)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生産物賠償責任¹⁾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樣態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발생의 普遍化, 피해의 廣範圍化, 책임의 不明確化, 입장의 非對等化 등의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피해로 전환되었고,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시의 구제와 관련한 사후처리 문제가 중요한 消費者保護施策으로 등장함과 아울러 생산물배상책임의 중요성도 그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民法의 전통적인 過失責任理論으로는 고도의 과학기술이나 제조과정 및 유통구조의 복잡화로 야기되는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법률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私法理論으로서 생산물배상책임의 법리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리의 발달과 관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特別法이

1)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제2차 생산제품인 공업제품에 한정된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농업생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산제품을 고려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사업방법서상 “生産物賠償責任”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현행 民法에 의하여 債務不履行責任, 瑕疵擔保責任, 不法行爲責任 등으로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契約當事者關係(privacy of contract)를 전제로 하는 계약책임 혹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책임법리는 다양한 법적기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입법방안이 제기되어 온 터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89년 11월 생산물배상책임의 立法施案作成果 1994년 6월 27일 ‘生産物責任의 立法方向’ 주제하의 세미나개최를 통하여 生産物賠償責任法の 제정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1996년 4월부터 위해제품에 대한 缺陷是正措置를 전 공산품(식품은 10월 시행예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였으며, 또 생산물배상책임법을 따르던 1998년²⁾에 시행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생산물책임법의 도입은 위해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및 사고예방대책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남발로 인한 인적·물적 소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결함의 판정기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생산물배상책임법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제조업계의 우려도 있지만 국제화, 개방화라는 명제앞에서 생산물책임의 입법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자료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법과 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대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의의,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된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의 법리체계와 소송방어대책, 생산물사고와 관련된 보험제도 등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미국, EC국가,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체계와 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보험제도에 미치는

2) 『조선일보』, 1996. 9. 5

영향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체계와 입법논의의 내용 및 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生産物賠償責任法の立法化가 保險制度에 미치는 영향과 國內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生産物賠償責任法과 關聯保險制度

1. 生産物賠償責任法の 意義

生産物賠償責任(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缺陷(defects)으로 인하여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제조업자, 판매자, 수입업자등)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生産物の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生産物賠償責任制度는 산업화에 따른 消費者 被害를 구제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탄생되었다. 현대의 産業社會에서는 高度의 科學技術을 활용한 제품이 大量生産되고 복잡한 유통형태를 거쳐 소비되므로 생산물배상책임에 충분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히 商品을 판매하는 자인 賣渡人에게 缺陷商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생활의 안전은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도 의존하지만 商品을 設計, 製造하는 製造者 등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함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소비자는 종종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法制의 整備, 去來慣行의 개선, 홍보,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여전히 증가일로에 있는데, 미국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소송을 포함한 不法行爲費用(tort cost)이 1994년도 기준으로 1,520억달러에 달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유럽국가나 일본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³⁾

<表 II-1> 주요국가별 불법행위비용(Tort Cost)의 GDP에 대한 비율

국가별	1980	1990	국가별	1980	1990
미국	1.55	2.33	호주	0.6	0.9
이탈리아	0.9	1.3	프랑스	1.1	0.9
벨기에	1.3	1.2	캐나다	0.7	0.9
독일	1.2	1.2	일본	0.7	0.7
스페인	0.5	1.0	영국	0.5	0.6
스위스	0.8	1.0	덴마크	0.4	0.4

자료 : Tillinghast, Insurance Pocket Book 1995, NTC Publication Ltd, p.175

이처럼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함상품으로부터 발생한 損害賠償責任을 제조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生産物責任精神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생산물배상책임은 그 적용대상, 그리고 책임의 근거법리 등에서 그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생산물배상책임의 인정 내지는 입법화가 세계적인 경향이 되고 상품의 국제적인 교역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수입국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책임부담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각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2. 生産物賠償責任法理의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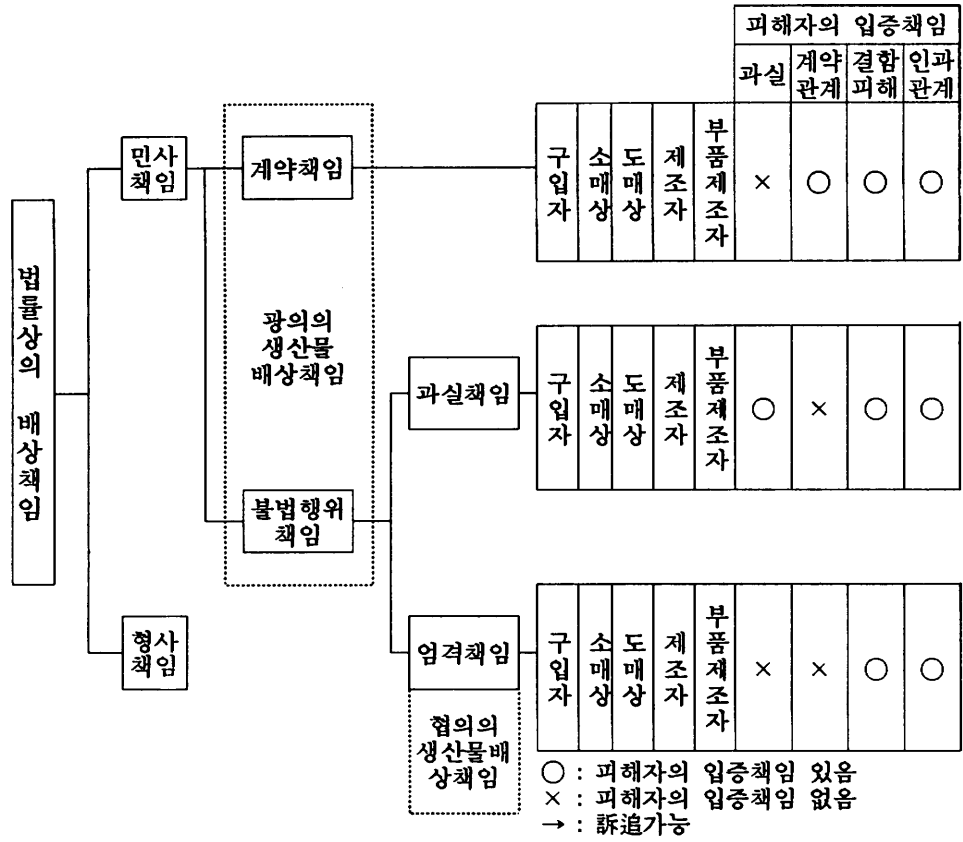
가. 生産物賠償責任法理

生産物賠償責任法理는 19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상품의 大量生産, 大量販賣 및 大量消費時代에 접어들면서 생산물배상책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判例에 의한 하

3) Ruth Gastel, *Insurance Issues Update : The Liability System*,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New York, 1996. 5.

나의 法理體系로 발전된 것으로서 세계 각국의 법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理는 통일된 聯邦法은 없으며, 州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책임법리는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으로, 실제 生産물배상책임소송에서는 이들을 병행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圖 II-1> 生産물배상책임의 법적 구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 및 소송사례」 국제90-12, 1990. 5.

1)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

산업혁명 직후에는 資本主義經濟의 확립과 産業保護에 대한 국가적인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또한 개인의 활동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제품의 瑕疵 또는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1842년 영국의 우마차사건 판례⁴⁾에도 나타나 있는데 제품에 대한 과실이 제조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직접적인 契約關係(privacy of contract)가 없는 소비자나 이용자에게는 民事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용하여 왔다. 그 후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칙은 사람의 안전에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inherently dangerous)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imminently dangerous)”에 한하여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예외는 독약을 비롯하여 모발세제, 총기, 폭발물 등에 한정되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사건⁵⁾을 시초로 제조자의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과실책임은 제조업자 등이 主意義務를 위반하여 결합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피해자가 제조자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주의의 무위반⁶⁾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도의 과학기술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

-
- 4) 우마차사건(Winter Bottom v. Wright, 1842)에서 피고가 우정장판과 우편물운송용마차의 공급·검사·수리제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가 공급한 마차의 하자로 인하여 마차의 운행중 마차가 전복하여 마부(원고)가 부상당하였는 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권용우, 「불법행위론」, 고시원, 1974, p.274
 - 5) 1916년 미국에서 제3자가 납품한 차륜을 부착한 자동차의 차륜이 이탈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서 모든 제품의 제조자는 계약당사자관계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이후 제조자의 과실책임법리가 확립된 사건임.
 - 6) 주의의무는 안전한 설계(duty of a safe design), 안전한 제조·조립·포장(duty of safely manufacture, construct, assemble and package), 시험과 검사(duty of test and insfection), 지시와 경고(duty of instruct and warn)로 분류한다.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평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여 제조업자가 제품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케 하거나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⁷⁾

2)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

일반적으로 過失責任法理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결함이 있어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이 없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결함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반면 소비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실책임법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保證責任法理(warranty liability)가 도입되었다.

보증책임은 商品의 賣買에 있어서 제조자·판매자 등의 賣渡人이 그 상품의 品質에 대해 明示的 또는 默示的인 保證을 하였으나 그 상품이 보증내용에 反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등의 買受人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보증위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無過失責任(no fault liability)이다. 이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과실책임보다 피해자측에 유리한 면이 있다. 보증책임에는 建本,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라벨 등에 의해 인정되는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⁸⁾과 제품 그 자체의 일정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한 默示的 保證(implied warranty)⁹⁾이 있다.

7) 입증책임 완화이론으로서 사실추정의 법칙(res ipsa loquitur), 당연과실이론(negligence per se)이 있다. 사실추정의 법칙은 일정요건하에서 사고발생 그 자체로부터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Escala v. Coca Cola Bottling Co., 1944 참조)이며, 당연과실이론은 제품마다 정하여진 안전규칙위반 등의 사실로부터 제조업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임.

8) 1932년 Baxtor v. Rord 사건에서 제조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자동차 앞유리에 대한 선전·광고를 신뢰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원고가 그 자동차의 주행 중 작은 돌로 유리창이 파손, 실명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당사자간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더라도 제조업자의 명시보증위반에 의한 책임을 부담케 함.

9) 1960년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사건은 묵시보증책임에서 계약관계요건을 폐지한 판례로 알려지고 있음. 즉 피해자는 판매업자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처로서 제조자와

3) 不法行爲法上の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s)

가) 법리의 배경

1963년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사건¹⁰⁾에 의거 법리가 확립된 엄격책임은 보증책임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제조자는 그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에 따라 嚴格責任을 일명 缺陷責任(defect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즉, 전통적인 過失責任法理에서는 피해자가 결함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複合産業構造上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엄격책임법리하에서는 피해자가 “製品의 缺陷有無(缺陷의 存在)”와 “그 缺陷에 따른 被害發生과의 因果關係의 存在”를 입증하면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모든 생산물(any products)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조업자 등에게 엄격책임법리를 부과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제조자 등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제어하기가 쉬운 지위에 있다 ② 제조업자 등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다 ③ 제조업자 등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도 이를 제품가격인상이나 보험에 부보함으로써 다른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④ 제조업자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능력을 증가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나) 결함의 유형

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으나 재판부는 상품의 묵시적보증은 직접 구입자 이외의 가족, 기타 이용자에게도 미친다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10) 캘리포니아주법원은 Shopsmith라는 동력기에 의한 신체상해사고소송에서 피해자가 동산매매법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내에 보증위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제조업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제조업자에게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생산물의 결함은 미국의 Restatement of Torts¹¹⁾ 402조에 의하면 “제품의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것(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to his property)”이라고 규정되어 있다.¹²⁾ 생산물의 결함유형과 발생요인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수 있으며 결함유형에 따라 책임부담법리는 달라진다.

<表 II-2> 제품결함의 분류 및 발생요인

결함구분		발생요인
제품자체 결함	설계상의 결함	-안전설계의 미비(예상오용에 대한 대비도 포함) -안전,기술기준에 불합격 -안전장치의 불비, 중요안전부품의 내구성부족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검사오류에 의한 재료부품의 결함,조립불량 -원재료의 불량, 원료혼입실수 -수송, 포장, 보관상의 불비
경고표시상의 결함	취급설명서 및 경고라벨	-경고사항의 탈루, 불충분, 예견가능한 오사용방지의 경고내용미비 -명시보증위반 -경고라벨위치, 부착불량
	광고·선전, 카탈로그, 영업사원의설명 등의 표시	-품질,특성의 중요한 불성실표시(사기적, 과실이 아닌 것도 포함) -명시적 보증위반

設計上の 缺陷(design defect)은 생산물의 설계 과정상에 내재된 결함을 말하며 생산물의 安全性, 效用性, 價格을 기초로 하여 생산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써

11) Restatement of The Law-Second Torts는 美國法律家協會가 過去의 判例를 集大成하여 條文의 形式으로 整理하여 註釋을 단 것으로 法律은 아니지만 큰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

12)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Internation Product liability*,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p.568

발생한다. 또한 결함있는 설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된 경우 모든 생산물에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일부 생산물에만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기준에 근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차충돌(second collision) 혹은 내충돌성(crashworthiness)”이는 설계결함의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製造上の 缺陷(construction or manufacturing defect)은 생산물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으로 설계와 실제로 다른 생산물이 제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함없는 설계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으나 사용된 원료, 부품 등에 결함이 있거나 가공, 조립과정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함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단계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적으며 대부분 품질검사시에 발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警告上の 缺陷(defect attribute to the absence of failure to warn)은 생산물의 설계나 제조상에는 결함이 없었으나 그 생산물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적절한 警告(warn)나 指示(instruction)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 사용상의 경고를 懈怠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나. 生産物賠償責任訴訟의 防禦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生産物賠償責任法에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嚴格責任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조자에게도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에

13) Larsen v. General Motors Co.,(1968)사건에서 제조자는 예견가능한 용법(foreseeable use)에 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조물을 설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자동차의 2차충돌에 대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이 판례에 따라 대부분의 주가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만 인정치 않고 있음. 安全總合研究所, 「生産物賠償責任」, 東京:有斐閣, 1989, p.64

따라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여야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생산물배상 책임법의 母胎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자의 법률상 방어대책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 寄與過失(contributory negligence)

寄與過失은 결합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자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 법리는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에만 적용되며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과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알라바마주, 콜롬비아주, 매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버지니아주이다.

2) 比較過失(comparative negligence or fault)

比較過失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이를 contributory negligence(Consumer Protect Act 1987, section 6(4))라 하는데, 독일 등 대륙법계의 過失相計와 같은 개념이다. 비교과실은 過失比率의 適用方法에 따라 크게 純粹比較過失(pure comparative negligence)과 修正比較過失(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로 분류된다.

일명 미시시피규칙(Mississippi Rule)¹⁵⁾이라고도 하는 純粹比較過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경감되는 제도로 알라스카주, 아리조나주, 플로리다주, 켄터키주, 루지애나주, 미시칸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워싱턴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14)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op. cit.*, pp.578-585

15) 이는 1908년 미시시피주에서 Federal Employer's Liability Act에 최초로 채택한 것에 연유한다. Larry D. Gaunt 외 3인, *Commercial Liability Underwriting Vol I*,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90, p.102

水晶比較過失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가해자의 일정수준과 같거나 적을 때 가해자에게 배상액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예 The 49% Type Rule , The 50% Type Rule)과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전액보상하도록 하는 방법(Slight/Gross Type Rule)으로 분류된다. 前者의 방법은 알라스카주, 콜로라도주 등 20개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後者는 네브라스카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表 II-3> 비교과실을 적용한 경우 손해배상액(배상액 100달러인 경우)
(단위 : %, 달러)

피해자 과실비율	순 수 비교과실	수정비교과실			기여과실
		50% Rule	49% Rule	S/G Rule	
10%	90	90	90	90	0
49%	51	51	51	0	0
50%	50	50	0	0	0
51%	49	0	0	0	0
90%	10	0	0	0	0

比較過失이 保證責任과 嚴格責任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는 보증책임과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보증책임에 대한 적용은 알라스카주, 위싱턴주, 미네소타주의 경우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인디애나주와 텍사스주는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엄격책임에 대한 적용은 엄격책임이 생산물의 결함 그 자체를 책임부담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인정하는 주도 있다. 영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교과실이라는 용어대신 比較責任(comparative fault)으로 사용하고 있다.

3) 危險引受(assumption of risk)

危險引受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감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각국의 책임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過失責任法理를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해자의 위험인수를 부정하고 있으나 寄與過失을 채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엄격책임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開發途上の 危險(development risk)

開發途上の 위험이란 제품의 유통개시 시점에서의 科學技術水準(state of the art)으로 그 제품의 결함발견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즉, 제품이 그 시대 산업계의 보편적인 설계나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 후 사고를 예방할 만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가 제조한 상품이 유통되기 이전 즉, 생산자의 점유를 벗어나기 전까지의 생산자의 기술수준정도(state of the art)에 부합하는 검사, 시험 등의 제반 조치를 함으로써 결함상태를 발견하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비록 그 후에 생산물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해도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동 이론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제조자에게 개발도상의 위험을 부담케 하는 경우 製品의 開發 및 技術革新은 정지될 것이고, 제조자가 賠償責任負擔能力 이상의 賠償義務를 부담하게 되어 被害者 救濟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C의 生産物指針도 開發途上の 위험을 免責으로 규정하되 가맹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맹국이 면책으로 하고 있다. 최근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5) 責任期間

생산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기간에는 消滅時效와 法定責任期間이 있다. 消滅時效(state of limitation)란 피해자가 사고발생일 또는 사고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행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消滅時效期間을 보통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는 신체의 상해와 사망, 재물사고에 대하여 보통 1年~6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別・州別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¹⁶⁾

또한 法定責任期間(statute of repose)은 생산물이 유통된 후 일정기간내의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제조업자로 하여금 반영구적인 책임부담을 면하게 하는 기한제한이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10年,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4年~12年으로 州마다 相異하다.

3. 生産物賠償責任關聯 保險制度

가. 生産物賠償責任對策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는 예전보다 손쉽게 제조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게 되므로 기업들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손해를 輕減시킬 수 있는 生産物責任對策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生産物責任對策은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가 中心이 되며 이에는 製品安全對策인 PS(Product Safety)와 防禦對策인 PLD(Product Liability Defence)가 있다. PLP는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책임만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제품회수나 기업 이미지¹⁷⁾의 低下에 따른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전체 손실의 豫防・防止 및 損害輕減對

16) 알라바마주의 경우 인체상해 1년, 사망과 재물사고 2년으로 되어 있다. 大羽寫一, 「米國の生産物賠償責任と懲罰賠償」, 日本經濟新聞社, 1991, pp.188-189참조

17) 1982년 결함이 있는 Tylenol로 인하여 Johnson & Johnson사는 소송제기전에 자발적으로 1억달러의 비용으로 회수를 하고 아울러 생산라인의 변경 및 재설계비용으로 1억5천만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텔레비전광고비용 백만달러를 지출한바 있다. 동기업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다른기업과는 달리 장기간의 기업이미지손상은 되지 않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http://www.marketingtools.com/ad.current/AD765.htm>("Pro

策까지 포함한다. PS(Product Safety)는 製品安全對策으로 제품자체의 安全設計만이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취급설명서나 제품본체에 부착된 경고라벨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는 제품전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하는 모든 사전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제품의 기획·개발에서 설계, 제조, 판매 또는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미치는 기술적인 대응이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설계단계가 최대 문제로 되고 있다. PLD(Product Liability Defence)는 결함생산물로 인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부담, 제품회수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손상 등 類型的·無形的 損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결함생산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대책을 말한다. 따라서 PLD는 사고발생시 가능한 한 생산물책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소송방어대책, 제품회수 대책,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등이 중심을 이룬다.

나. 保險制度

生産物の 缺陷 등 瑕疵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체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넓게는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損害(third party liability)와 기업체의 自體損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表 II-4> 생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유형

손해구분		손해유형
직접적인 손해	배상금	인적손해, 재산손해
	분쟁해결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기타비용
간접적인 손해	경제적손실	제품회수등 사후조치비용, 이익의 상실 등 휴업손해
	비경제적손실	소비자의 신뢰저하, 노동의욕의 감퇴 등

duct Liability”, American Demographics, June 1995)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입힌 身體障害(bodilly injury) 및 財物損害(property damages)를 말하며, 제조업자의 자체손실은 제품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손해, 제품의 性能이나 機能低下가 다른 제품에 미친 손해, 제품의 使用不能으로 인한 손해, 製品自體의 손해, 缺陷製品의 회수·검사·수리 또는 대체에 소요된 費用損害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前者의 손해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product liability insurance)에서 담보하며, 後者は 生産物回收保險(product recall insurance) 또는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Policy)에서 담보한다.

<表 II-5> 생산물결함관련보험

보험종류 \ 담보손해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생산물의 회수비용	제3자에 대한 신 체, 재물손해배상 책임(TPL)	TPL에 기인 한 휴업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	○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	○	×(회수)	×	×	×
생산물회수비용보험	△(회수에 한정)		○	×	×

자료 : 보험개발원, 「생산물회수비용보험」, 1995.2, pp.8

1) 生産物賠償責任保險

生産物賠償責任保險(products liability insurance 혹은 products 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insurance)은 生産物危險(products hazard) 또는 完成品危險(completed operations hazard)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생산물위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하며 완성품위험은 피보험자가 행한 업무의 결과에 기인하여 업무의 종료 후에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法律上の損害賠償金, 損害의 防止・輕減費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保險會社 協力費用, 피보험자가 지급한 訴訟費用, 辯護士 費用, 仲裁・和解 또는 調整에 관한 費用,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供託保證保險料 등이다. 그러나 계약상 가중된 賠償責任(contractual liability), 水質汚染・土地汚染・大氣汚染 등 일체의 環境汚染(environmental risks)에 대한 배상책임 및 汚染除去費用,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의 性質 또는 瑕疵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2) 生産物回收費用保險

生産物回收費用保險(products recall insurance)은 기업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등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러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검사, 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다. 담보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회수제품의 缺陷有無檢査費用, 回收製品의 修理費用, 대체품의 제조원가, 회수제품 또는 대체품의 수송비용등 회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과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에 대한 광고비용, 전화, 팩스, 우편 등의 통신비용 등 회수부대비용이다.

3)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

생산물의 인도 후, 保證期間内に 발견된 瑕疵로 인하여 생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고장 또는 기능의 불능 등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는 그 제품에 대한 보증책임이 발생한다.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insurance)은 제조업자

가 당해 생산물을 직접 보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 등의 보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전술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면책사유 중의 하나인 생산물자체의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III. 主要國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 運營現況

1. 美國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 運營現況

가. 生産物賠償責任 法理

美國의 生産物賠償責任訴訟은 1963년 엄격책임이 도입된 이후 석면소송, Agent Orange, Dalkon Shield 등의 Toxic Torts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Silicone Breast Implants, EMFs(Electromagnetic Field)¹⁸⁾, 담배, 납 등의 소송제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聯邦地方裁判所에 제소된 소송건수는 1975년 2,393건에서 1990년 19,428건에 이르러 8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이와대 Michael Saks 법학교수는 州地方裁判所에 제기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9만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¹⁹⁾

다음 <表Ⅲ-1>은 미국내의 生産物責任 訴訟件數 및 平均評決額을 나타낸 것으로서 訴訟件數의 지속적인 增加와 더불어 賠償水準의 현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배상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보험 및 위험관리학회에서 전자기장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기회사나 전기제품 제조업체의 위험관리자들은 향후 EMFs소송이 쇄할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고, 또 보험회사는 오염면책조항을 이용하거나 손해배상청구기준의 EMFs추가약관을 첨부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재보험, 「해외보험시장」, 제75호, 1995. 5. 30. pp. 9-11.

19) <http://www.marketingtools.com/ad.current/AD765.htm>("Product Liability", American Demographics, June 1995)

<表 III-1> 미국의 제조물소송 건수 및 평결액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년도	평결소송건수		평균평결액	평결액의 중간값
	100만\$초과	전체건수		
1980	127	7,755	563	225
1981	238	9,071	801	340
1982	280	8,944	851	300
1983	366	9,221	1,246	300
1984	415	10,745	1,467	500
1985	590	13,554	1,091	550
1986	410	13,595	1,007	297
1987	428	15,151	863	265
1988	481	17,140	1,324	485
1989	588	14,348	1,058	400
1990	735	19,428	1,136	300

자료 : "Current Award Trends in Personal Injury", Jury Verdict Research, INC, 1993

1)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

생산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는 엄격책임을 근간으로 하고 과실책임, 보증책임을 追加적으로 적용하는 추세에 있다. 過失責任에 있어서 “事實推定理論”의 채택, 賠償責任과 관련하여 “契約當事者關係”의 완화 등 실질적으로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1963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엄격책임법리를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1965년에는 不法行爲法 Restatement가 제정되었다.

엄격책임법리하에서 피해자는 제품의 缺陷과 사고간의 因果關係를 입증하면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缺陷의 判斷基準”이 중요한데, 前述한 不法行爲法 Restatement § 402 A조에서는 “不合理한 危險(unreasonably dangerous)”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무엇이 불합리한 위험인가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속출하고 있다.

<Ⅲ-2> 경고, 표시에 관련된 책임이론 및 근거법

구분	책임법리	근거법
경고의무위반	과실책임	-Restatement §395(Negligent manufacture of chattel dangerous unless carefully made) -Restatement §388 comment n (Warning given to third person)
경고·표시의 결함	엄격책임	-Restatement §402A comment j (Directions or Warning), -Restatement §402A comment h
명시 보증위반	보증책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부실표시		-Restatement §402B(Misrepresentation by Seller of Chattels to Consumer) -연방거래위원회 제12조-16조(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자료 : 安田總合研究所, 「生産物賠償責任對策」, 東京 : 有斐閣, 1994, p.189

현재는 “一般消費者가 製品의 安全性에 대해 가지는 期待(the expectation of ordinary consumer)”에 附合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消費者期待基準(consumer expectation test)”, 제품의 효용과 위험을 비교하여 “危險이 效用을 上廻하는 경우(risk outweighs utility)”에 결함을 인정하는 “危險效用基準(risk utility test)”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기준이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消費者에 대한 危險여부에 따른 平均的인 技術水準과 安全基準”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된 使用 또는 濫用(misuse or alternation)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기업측은 “豫測可能한 誤用 또는 濫用”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결함으로 인정된다.

가) 懲罰的 賠償金(Punitive Damages)

미국에는 通常의 損害賠償金(治療費와 慰藉料, 損失利益 등) 외에 加害者の 故意 및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懲罰的 賠償金(Punitive Damages)제도가 民事訴訟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加害者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그러한 행위의 再發

防止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고유의 제도이며 징벌적 배상금은 원고가 입은 被害額과는 무관하게 산출되고 금액적인 상한도 없기 때문에 被害者에 대한 同情과 被告製造業者에 대한 反感으로 쉽게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고측에서 實損害額과 관계없이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²⁰⁾도 빈번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나) 連帶責任法理(Joint and Several Liability)

連帶責任法理(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하나의 不法行爲에 대해서 複數의 被告(加害者)가 존재하는 경우 原告(被害者)는 被告들간의 責任比率에 관계없이 어느 피고에게도 배상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이 法理下에서 피고는 자기의 책임비율이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전액을 청구받으면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²¹⁾

이에 따라 資金力이 充分한 企業(deep pocket)이 消費者 被害를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되며, 이는 제조업자를 한층 더 製造物訴訟의 標的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

20)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1975년에 발생한 포드핀트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배심평결액 1억2,850만불 중 1억2,500만불은 징벌적 배상금이었다. 이 사건은 51세의 여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追突을 당하여 가솔린탱크가 폭발한 사고로, 그 여자는 사망했고 동승했던 13세의 소년은 전신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측은 차량에 탑재된 가솔린탱크에 추돌의 충격으로 쉽게 폭발하는 “構造的 缺陷”이 있다고 주장하고 캘리포니아주재판소에 포드사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동 제품의 판매초기 포드사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대만히 한 사실이 드러났고, 車輛改善費用과 사고발생에 따른 被害豫想額을 비교하여 개선을 하지 않은 점 등 포드사에게 불리한 내부자료가 노출되어 '78년 2월 배심원단은 포드사에 通常의 賠償金으로 3백5십만불, 懲罰的 賠償金으로 1억2천5백만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은 포드사가 핀트가 위험한 缺陷車인 것을 알면서도 설계변경과 회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를 무시한 重大한 惡意가 있다고 인정, 節減費用을 1억달러로 계산하고 거기에 2천5백만불을 가산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評決한 것이다. 最終 賠償額은 재판관에 의해 6백6십만불로 감액되어 확정되었다.

21) 전통적인 과실책임법리하에서는 자동차 충돌사고시 가해자인 운전자 외에 자동차제조업자에게 일정부분(예: 자동차제조업자 10%, 운전자 90%)의 過失責任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에게 충분한 자금력이 있으면 원고는 각각으로부터 책임액을 지불받지만 운전자에게 자금력이 없으면 배상액의 10%밖에 받지 못하나 연대책임법리하에서는 資金力이 있는 加害者(企業)에게 배상금의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자금력이 없는 운전자에게 求償權을 행사해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의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 경향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책임비율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生産物訴訟의 피고가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高額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 陪審員制度

陪審員制度는 재판상의 사실인정(예: 당해 상품에 대한 결함유무의 인정) 등에 대해 6명~12명의 일반인을 법정에서 출석시켜 법정심리 중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청취하게 한 후 그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이다. 陪審員은 피고의 책임유무와 피고의 손해배상금의 규모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결한다. 배심원은 재판관과는 달리 법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넓지 않지만 한사람의 재판관에게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편견과 先入觀이 없는 일반인들의 공정한 판단이 民主主義에 부합한다는 논리에서 效用性을 가지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美國市民의 基本的인 權利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는 생산물배상책임소송의 경우 “缺陷과 被害의 因果關係證明”에 대해 통상의 지식수준을 벗어나는 專門的이고 科學的인 論爭을 통한 합리적인 평결이 필요한데, 비전문가인 배심원이 그 논쟁을 평가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고의 주장이 보다 과학적이어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라) 成功報酬制度(Contingent Fee System)

成功報酬制度(contingent fee system)는 辯護士가 事件을 辯護함으로써 獲得possible한 賠償金의 一定比率을 報酬로 갖는 制度이다. 또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사건 인수시 先手金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사건처리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 변호사가 지출하고 敗訴한 때에도 訴訟費用 등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²²⁾ 이에 따라 소송비용이 없는 피해자도 재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

22) 성공보수비용의 표준액은 수입된 사건이 소송전에 해결되는 경우 배상액의 33%, 소송하여

기 때문에 “市民의 裁判받을 수 있는 權利”를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나, “辯護士數의 過多”와 “값싼 訴訟費用”이 결합되어 訴訟의 多發과 巨額賠償請求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는 1993년 현재 약 85만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成功報酬制度를 기반으로 소송을 맡고 이를 통해서 一獲千金을 얻을 수 있는 고액의 청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지불하는 訴訟費用은 연방정부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불 정도이다.

2) 聯邦 生産物賠償責任法 立法化의 最近動向

1980년대 중반의 保險危機(insurance crisis)를 배경으로 生産物賠償責任事故에 관한 소비자와 판매자 이익의 公平한 均衡提供,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不確實性의 除去를 위해 生産物賠償責任法理를 연방수준으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²³⁾ 특히 1980년대 중반에는 연방의회에 “聯邦生産物賠償責任法”이 상정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이상²⁴⁾의 生産物賠償責任法案이 제출되었으나 연방법으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 중반의 賠償責任保險危機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산물배상책임법을 근간으로 한 불법행위법의 개정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1995년 상·하양원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제102회 의회와 제103회 의회에 제출된 S.640과 S.687의 주요내용은 ① 제조자 이외에 판매자의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하고 ② 대체분쟁처리제도(ADR:Alternative Dispute

승소한 경우 40%임.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ibid*, pp.564-566

23) 생산물배상책임법을 연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배경은 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성 해소, ② 소비자는 제품 유통과 관련된 모른사람에게 소송제기한다, ③ 주간 무역거래상의 비효율성야기, ④소송당사자가 유리한 주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쟁송비용의 상승으로 제품가격상승을 초래, ⑤제조업자의 신기술제품의 판매중단 : 생산물책임소송을 경험한 회사의 36%가 생산량을 감소, 15%는 종업원 감원, 8%가 공장폐쇄를 하였다고 한다. <http://www.brobeck.com/docs/meddevic.htm>

24) 1979.10 : 연방상무성의 The Model of Uniform Products liability Act, 1983.6 : Kasten법안, 1985.7 : 단포스법안, 1986.9:Product Liability Reform Act S.2760, 1987.3: Uniform Product Safety Act HR.1115, 1989.7 : Kasten의원의 Federal Products Liability Reform Act S.14000

Resolution) 등을 도입하여 ③ 生産物 사고시 “분쟁처리코스트”를 경감하고 ④ 징벌적 배상, 책임기간 등을 연방기준으로 통일하는 것 등이었다. 한편 上院 商務委員會는 보험회사 자체의 放漫한 經營으로 인하여 保險危機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保險危機와 生産物賠償責任制度와는 무관하다는 판단하에 生産物賠償責任制度 改革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表 III-3> 생산물배상책임법안의 주요내용

구 분	날짜 및 주요내용
S.100 (제99회 의회)	- 1985년 1월 3일 Kasten상원의원이 무역위원회에 S.100(the Product Liability)제출 - 제98회 의회중 공표된 생산물배상책임법안(Product Liability Bill) S.44와 유사
S.640 (제102회 의회)	- 1991년 3월 13일 Kasten, Rockefeller상원의원이 무역위원회에 제출
S.687 (제103회 의회)	- 1993년 3월 31일 Rockefeller상원의원이 무역위원회에 제출 - 非經濟的인 損害에 대해서는 連帶責任法理를 부정함 - 懲罰的 賠償金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嚴格하게 함 - 資本財에 관하여 제조후 25년의 法定責任期間을 설정함 - 原告에 대하여 Penalty를 排除함 - 政府機關의 승인을 얻은 제조물에 대해서는 懲罰的 賠償金을 부과하지 않음. 식품 의약품국(FDA)의 승인을 얻은 의약품, 의료기기, 연방항공국(FAA)의 인정을 받은 경비행기 등은 제조업자가 연방당국에 情報을 隱蔽하거나 不正確한 情報을 提供한 境遇를 제외하고는 懲罰的 賠償金 賦課를 禁止함.
HR.956 (제104회 의회 - 하원법안)	- 1995년 2월 15일 하원 Henry Hyde위원장이 Common Sense Legal Standards Reform Act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 1995년 3월 가결 - 각주 또는 연방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징벌적배상금은 25만달러/경제적손해액의 3배 금액중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연방식품의약품(FDA)의 인증을 받은 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예외로 함 : FDA defence - 각주 및 연방 민사에 있어 연대책임제도를 폐지하고, 피고는 귀책성의 기여비율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 -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15년의 책임기간을 설정 - 신체장해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약물사용 또는 주중농도가 50%이상을 초과하여 장해에 기여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제조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제조물소송에 있어서 그 제조물을 개조 또는 오용한 경우 배상책임은 감소할 수 있음. - 의료과요소송에서는 위자료 등의 비경제적손해배상은 25만달러까지 제한됨 - 선택적 책임이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정
S.565 (제104회 의회 - 상원법안)	- 1995년 3월 15일 상원 Rockefeller, Gorton, McConnell, Pressler등 상원의원들이 The 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 1995년 5월 10일 가결 - 각주 또는 연방의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하여만 적용(연방하원가결법안이 연방 및 주의 쌍방의 민사소송 전체에 적용됨) - 징벌적배상금은 25만달러/보상적 손해보상액의 2배 금액중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상근종업원이 25명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징벌적배상금은 25만달러/보상적 손해보상액의 2배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위자료 등의 비경제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제도(joint liability)를 폐지(경제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도가 적용됨) - 내구재에 대해서는 20년간의 책임기간을 설정 - 소매업자의 배상책임은 그들 자신의 과실 또는 명시보증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

자료 : <http://www.senate.gov/comm/Dem-policy/general/lb-10.html>

이러한 논쟁속에서 부시정부는 現水準의 生産物賠償責任負擔이 過度하여 미국의 海外競爭力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生産物賠償責任制度改革을 立法上 優先課題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2년에 징벌적배상제도 등에 관한 각 주법에 대한 모델법안이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基調는 클린턴의 신정부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1995년에 상·하원에서 가결된 최근 법안의 주요개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損害賠償額의 制限(cap on punitive damages)이다. 하원법안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액은 25만불 혹은 경제적 손해²⁶⁾의 3배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며 “타인의 안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무관심했다는(conscious, flagrant indifference to the safety of others)”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입증(clear and convincing)이 필요하다. 또한 FDA가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징벌적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FDA De-fence”를 두고 있으며, 위자료 등의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 連帶責任(joint liability)을 인정하지 않고 각 가해자의 자기책임부분에 대해서만 分擔責任(several liability)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상원 법안에서는 징벌적배상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징벌적배상액은 25만불과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를 포함한 전 손해의 2배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종업원 규모가 25인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는 25만 달러(약 1억9천2백만원²⁷⁾)와 전 손해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生産物の 範圍는 양법안 모두 혈액제제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責任主體는 결합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자, 유통시킨 자(판매자, 리스업자)로서 嚴格責任이 적용된다. 단지 판매만 하는 자는 엄격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실책임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양 법안 모두 공히 피해자의 음주나 약물복용이 사고에 50% 이상 기여한 경우에는 제조자

25) <http://www.senate.gov/comm/Dem-policy/general/lb-10.html>

26)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체손해와 재산적손해가 아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상실되는 수익, 제품 그자체의 교환, 수리, 복구비용 등을 말한다.

27) 환율은 1995년도말 기간평균을 적용하였음(미국 1달러: 771.27원, 1ECU:989.87원) 이하동일.

등에게 배상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소비자 등이 제품을 개조하였거나 오사용(alternation or misuse) 등이 원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들의 過失比率만큼 제조자 등의 過失責任比率이 감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責任期間의 制限(statutes of repose)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長期消滅時效의 경우(long-term liable period) 하원법안은 제품을 引導한 때로부터 15년, 상원법안은 耐久財(durable goods)에 한정하여 20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법안의 短期消滅時效(short-term liable period)는 손해 및 그 원인을 발견한 때로부터 2년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상하 양원에서 가결된 소비자 단체의 주장을 축소하고 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 S.687 (The 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 1995년 5월 상원가결), HR.956 (the 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and Legal Reform Act of 1995, 1995년 3월 하원가결)에 대해서는 하원의 법안이 매우 폭넓은 영역에 대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출할 것인가가 우선 문제가 된다. 그 관련사항으로는 모든 민사소송사건에 적용, 醫療過誤訴訟에서의 위자료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連帶責任制度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양원의 법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들 법안을 조정, 일체화하고 상하 양원에서 가결을 받은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상원법안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제한, 연대책임의 적용범위 한정 등으로는 소비자보호가 불충분하고 소비자이익도 외면되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⁸⁾

28) 동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상하 양원에서 재가결하여 각각 2/3이상 찬성된 경우에 성립된다. <http://www.dorsai.org/~jdadd/veto.html>, 『한국경제신문』, 1996. 5. 2.

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運營現況

美國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한 이래 구미 등의 세계각국에 파급되어 동 보험의 기본이 되고 있다. 1994년의 영업현황을 보면 동 보험의 보험료(Net Premiums Written)는 19억 달러로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약 0.8%를 점유하며 전체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188억 달러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동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253개인데²⁹⁾ 이 중 상위 5개사의 보험료는 6억6천만 달러로 동 보험시장의 32.9%를 점유하며, 연간 수입보험료가 500만달러 이상인 상위 51개사의 보험료는 약 18억달러로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다.

<表 III-4>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실적(Net Premium Written)

(단위 : \$백만, %)

년도	일반배상책임보험 ¹⁾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증가율	합산비율	손보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합산비율	손보점유비
1990	18,123	-1.7	109.0	8.3	-	-	-	-
1991	16,851	-7.0	110.0	7.6	2,143	-	135.1	1.0
1992	17,006	+0.9	132.8	7.5	1,891	-11.8	147.1	0.8
1993	17,752	+4.4	132.4	7.4	1,859	-1.7	212.1	0.8
1994	18,802	+5.9	125.1	7.5	1,992	+7.2	130.8	0.8

주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배책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포함됨.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1995 Property/Casualty Insurance Facts, 1995

29) 1994년말 현재 미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현황

구분	상위사	500만이상	500만미만	전체사
회사수	5개사	51개사	202개사	253개사
보험료(억\$)	6.6	18.4	1.5	19.9
점유비(%)	32.9	92.3	7.7	100
합산비율	-	130.2	144.7	131.4

주: 상위 5개사: American Financial Group, ST Paul Group, Chubb Group, Dorinco Reinsurance, Home Insurance
자료: AM 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 :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1995, pp.258-259.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는 1986년 이전까지는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에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Coverage Part를 첨부하여 담보하였다. 1986년 이후부터는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을 포괄담보(All Risk Coverage)하는 형식으로 변경된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으로 담보하거나 별도로 독립된 生産物賠償責任保險(I,II)에 의거 담보하고 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서는 生産物결함으로 인한 生産物자체의 재물손해와 生産物回收費用은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Products Guarantee Legal Liability Special Clause와 Products Recall Insurance와 같은 별도의 약관도 운영되고 있다.

1) 保險約款 種類

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1986년 ISO(Insurance Services Office)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으로 1980년대 배상책임보험위기(Liability Insurance Crisis)를 계기로 하여 occurrence basis(손해사고기준)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기존 occurrence basis(손해사고기준)에 claims-made basis(손해배상청구기준)의 약관을 신설하고 ②보험담보의 대상인 급격한 사고에 의한 오염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또한 ③생산물배상책임사고 이외의 다른 배상책임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기간중의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 of Liability)을 설정한 것 등이었다.

손해배상청구기준 약관은 도입 과정에서 약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관련단체의 찬반논의³⁰⁾를 거쳐 도입된 것으로서 메사츄세츠, 뉴저지 2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30) claims-made basis의 신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주 보험청, 고객인 기업, 보험브로커·대리점을 포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IIAA(Independent Insurance Agents of America)와 NAPIA(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Insurance Agents) 등의 대리점단체는 약관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① claims-made basis의 복잡성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증대된다 ② 연장보고기간이 설정되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보험회사에 의한 중도해약과 갹신거부가 예상된다는 것은 "Public Policy"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③ claims-made basis로 인수를 행할 경우, 그 후 보험회사의 변경이 곤란하게 되어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는 보험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의약품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채용되고 있지 않아 보험료기준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체 실적의 20%내외를 점유하고 있다.³¹⁾

〈表 Ⅲ-5〉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담보증권별 실적
(단위 : 건, 백만달러)

년도	손해사고기준			배상청구기준			합계		
	보험료 ¹⁾	사고건수	손해액 ²⁾	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1985	1,132	276,994	1,342	154	6,965	175	1,286	283,959	1,517
1986	1,953	204,038	1,361	265	8,353	176	2,218	212,391	1,537
1987	2,277	236,521	1,263	433	21,886	237	2,710	258,407	1,499
1988	2,169	176,806	1,279	435	23,079	321	2,604	199,885	1,601
1989	2,042	210,302	1,363	424	16,308	349	2,466	226,610	1,711
1990	1,839	276,623	1,344	401	15,053	373	2,240	291,676	1,717
1991	1,689	258,716	1,375	390	11,282	287	2,079	269,998	1,662
1992	1,568	215,810	1,387	296	25,410	280	1,863	241,220	1,668
1993	1,565	221,117	1,354	271	23,368	283	1,836	244,485	1,637
1994	1,504	192,616	1,469	350	19,160	298	1,854	211,776	1,766

주 : 1)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출수제를 감안한 보유보험료임.

2) 손해액은 지급보험금과 미지급보험금을 합한 것에서 출수재보험금, 배분가능손해사정비(allocated loss expense), 구상금을 감안한 수치임.

자료 : AM 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 :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1995, pp.134-135

31) 그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거론된다.

- ① 경쟁을 수용하는 환경으로 변화해간 것
미국의 손보업계는 1986년 결산 이래, 완전히 이익을 회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 제한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claims-made basis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② "Accident" case에 대해서는 반드시 Claims-made basis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의약품·화학품 등 "Exposure Case"와 관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claims-made basis도입에 대한 강한 필요성이 있지만, "Accident Case"에 대해서는 원래의 occurrence basis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 ③ claims-made basis의 복잡성에 따른 오류에 의해 고객에 대한 배상리스크의 증대가 예상되었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약관에서의 생산물배상책임 담보는 보험증권상 담보 지역내에서 계약자의 생산물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힌 사고가 遡及擔保日字(retroactive date)³²⁾와 滿期日(또는 통지기간의 연장담보 : extended reporting period³³⁾)사이에 발생하여 보험기간중에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증권상 약정한 補償限度額내의 損害賠償金과 소정의 事故處理費用을 보상한다.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는 CGL의 보상한도액과는 별도로 독립된 事故當 補償限度額(Each Occurrence Limit)과 總補償限度額(Aggregate Limit)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당해 생산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생산물의 제조, 공급,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조업자, 자기명의하의 판매상인(백화점등), 부품제조 및 공급업자, 조립업자, 수입업자, 판매상인(도소매업자),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설치수리업자 등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부보하고 있는 생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입힌 身體障害 또는 財物損害와 訴訟費用, 辯護士費用, 損害防止費用, 懲罰的 賠償金(punitive damages) 등이며 전쟁 등과 같은 절대적 면책위험과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sistership exclusion clause), 생산물 자체손해(product damage itself)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배상책임보험약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유무에 대하여 명기를 피하고 있으며 미국 각주의 判例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담보를 허용하는 주와 허용하지 않는 주로 大別된다.³⁴⁾ 이 중 보험담보를 허용하지 않는 주는 Public Policy(공공

32) 소급담보일자는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policy)약관을 손해배상청구증권(claim made policy)으로 갱신하는 경우 특수한 담보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청구된 배상액을 전부담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이전의 특정 일자이후로 손해배상청구된 사고만을 담보하는 소급담보일자를 둔다.

33) 통지기간의 연장담보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보험기간종료후 일정기간내에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가 1간의 종료일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는 하나의 특약조항으로 자동연장담보(automatic ERP)와 선택연장담보기간(optional ERP)가 있다. 선택연장담보의 경우는 보험기간종료후 60일이내에 추가보험료 200%를 내면 보상한도액이 1차복원이 되며 미통보된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제한없이 담보한다.

정책)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판에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生産物賠償責任保險(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동 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을 CGL로 담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담보방식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CGL을 통하여 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독립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으로 담보하고 있다.

첫째, CGL에서는 의약품 등과 같은 일부 고위험제품에 대해 보험담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약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둘째,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상한도액을 다른 배상책임리스크와 별도로 설정하기를 바라는 기업이 있다. 셋째,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해서만 claims-made basis로 하고 다른 배상책임리스크에 대하여는 occurrence basis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다) 其他 生産物關聯保險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 이외의 생산물관련 보험으로는 CGL이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면책위험인 缺陷生産物 自體損害와 生産物回收費用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 운영되고 있다. 生産物回收費用保險(product recall insurance)은 聯邦法規인 消費者安全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 有害하고 缺陷있는 생산물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규제³⁵⁾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결함생산물

34)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금은 1784년에 최초로 인정되었으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서는 1852년에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현재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으며 채택하지 않은 주는 루지애나주, 매사츄세츠주, 네브라스카주, 위싱턴주이다.

35) 결함제조물회수를 규정하는 관련법규로는 연방식품·의약품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도로교통 및 자동차안전법(자동차 및 부속장비), 소비자제품법(일반공산품)등이 있으며 리콜을 담당하는 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그 자체손해는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policy)에 의거 담보된다.

2) 保險料率

營業賠償責任保險의 保險料率は ISO(Insurance Service Office)가 산출하는 Prospective loss cost를 기초로 하여 각사가 자율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ISO에 의해 공표된 美國 生産物賠償責任保險料率(1990 edition)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保險料率³⁶⁾은 附加保險料 42.9%³⁷⁾, 危險保險料 57.1%로 구성되었으며 손해사고기준과 손해배상청구기준의 증권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험증권을 손해사고기준 증권에서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과 손해사고기준 증권의 보험요율수준은 5년간이 지나야 같은 수준이 된다.³⁸⁾ 예를 들어 건전지제조업체가 손해사고기준 증권에서 보상한도액 \$25,000 /\$50,000, 보험요율 2.11%인 손해배상청구 증권으로 更新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1년간의 적용보험요율은 1.77% (=2.11% - (0.16 × 2.11)%)이 된다. 또한 기본보상한도액 \$25,000/\$50,000을 초과하여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가정용제품, 완구, 가전제품, 레저용제품을 관장하며 93년에 367건(2,800여개품목)을 실시하였음.
-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 자동차 및 자동차부속장비를 관장하며 1994년도중 실시건수는 자동차 246회(6,497,060대), 부속품 38회(3,616,235개), 타이어 5회(93,090개)임.
- 기타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청(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농무성식품안전검사서비스(육류, 가금류), 알콜담배화기국(알콜음료), 해안경비대(레저용보트 및 보트장비), 환경보호청(살충제), 도시개발 및 주택성(주택)등이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95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조사」, 1996.4, pp.513-524참조.

36) 보험요율은 기본보상한도액 \$25,000/\$50,000인 1986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근거로 하는데 \$25,000은 1사고당 신체상의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단일 기본보상한도액이며 \$50,000은 1년간 총보상한도액을 의미한다.

37)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acquition costs) 25.0%, 사업비(administrative costs) 9.5%, 세금 및 수수료(taxes and fees) 3.4%, 이윤 및 예비비(profits margin and contingency loading) 5.0%로 구성됨.

38) 손해사고기준을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의 요율수준은 1차년도는 손해사고기준증권의 84%, 2차년도 90%, 3차년도 97%, 4차년도 98%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요율은 보상한도액 증액에 따라 상향조정된다.

最低保險料는 基本補償限度額에 대한 것이며 보상한도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만큼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 기본보상한도액(\$25,000/\$50,000)에 대한 최저보험료는 報償限度額計數表의 A군의 경우 \$ 75, B군 \$150, C군은 \$200이며, 기본보상한도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보상한도액의 최저보험료에 보상한도액인상계수를 적용하여 이를 최저보험료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액을 기본보상한도액에서 \$1,000,000(계수 C군)로 인상하는 경우 최저보험료는 \$550(=\$200×2.75)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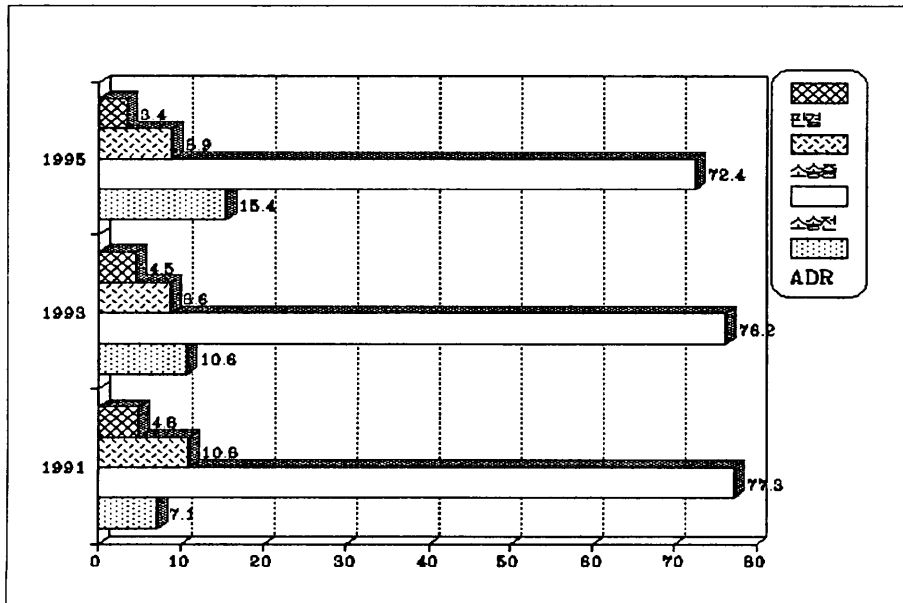
3) 損害賠償額

가) 보험금처리 단계별 손해배상액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처리 단계별 현황을 보면, 전체 소송건수 중 賠償審理를 경유하여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약 4%정도이며 대부분은 법정심리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특히 ISO의 1995년 배상책임보험관련 조사에 의하면 ADR(Alternative Dipute Resolution)에 의해 해결되는 비율이 1991년 7.1%에서 1995년 15.4%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소송중에 있는 것을 10.6%에서 6.9%로, 判決은 4.6%에서 3.4%로 1991년에 비해 각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訴訟前 解決이 증가함으로써 보험사의 費用保險金도 그만큼 減少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圖 Ⅲ-1> ISO 배상책임보험사고(CGL)의 해결방법별 분포



자료 : ISO, Closed Claim Survey for Commercial General Liability:Survey Results(1995),1996. 5.

나) 결함유형별 손해배상액

미국 ISO가 1977년에 13,191건의 생산물배상책임 소송사례를 분석한 종료된 支給保險金 調査報告書(closed claim survey)에 의하면 결함유형별 사고건수 비율은 製造上の 缺陷 42.2%, 設計上の 缺陷 16.9%, 라벨·警告文의 不備 10.2%로 나타났다.

결함유형별 平均賠償額은 라벨경고가 41,694달러로 가장 많고 설계상의 결함 33,895달러, 제조상의 결함 9,494달러로 사고건수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함별 책임부담 근거법리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³⁹⁾

39) 安全總合研究所, 「生産物賠償責任對策」, 東京 : 有斐閣, 1994, p.186

<表 Ⅲ-6> 결합유형별 사고건수 및 평균손해배상액

(단위 :%, 달러)

결합유형		사고건수 ¹⁾	사고비율	평균배상액
설계상의 결합	본질적으로 위험한 경우*	2,235	16.9	33,895
	안전장치의 결여	716	5.4	44,926
	유해작용, 오작동	2,618	19.8	11,120
	내구성의 결여	1,132	8.6	11,867
제조상의 결합	본질적인 것*	5,572	42.2	9,494
	제품시험상의 결합	3,970	30.1	11,423
	재질상의 결합	529	4.0	21,030
경고·표시 상의 결합	라벨, 경고문의 불비*	1,343	10.2	41,694
	취급설명서의 불비	513	3.9	23,030
기 타	수리오류	1,832	13.9	5,448
	외적요인의 영향	3,597	27.3	871
	기 타	3,072	23.3	5,855
합 계		13,191	-	10,316

주 : 1) 동일사고로서 2개이상의 사유인 경우는 해당사항에 중복하여 계상함.

자료 : ISO, Closed Claim Survey, 1977

다) 배상유형별 손해배상액

1976년도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危機시 미국내에서 동 보험을 인수하고 있던 23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1976.7.1~1977.3.15 동안 조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對人賠償과 對物賠償에서의 특징적인 점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은 사망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29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건수의 3.6%인 반면에 평균손해배상액은 전체의 18.8%였으며, 경상이 5,606건으로 가장 많은 68.2%를 차지하나 금액대비로는 22.2%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表 III-7> 대인배상 장해정도별 손해배상액

(단위 : 건, %, 달러)

장해정도	지급건수	건수비율	평균배상액	배상액비율
사 망	296	3.6	132,871	28.8
중 후유장해	244	3.0	255,378	29.9
경 후유장해	188	2.3	157,238	14.2
중 상	1,887	23.0	16,555	15.0
경 상	5,606	68.2	8,258	22.2
합 계	8,221	100	25,390	100

자료 : 大羽寫一, 「米國の生産物賠償責任と懲罰賠償」, 日本經濟新聞社, 1991,p.117

製品別 對人賠償의 支給件數는 식품, 육류제품, 소프트음료 등의 식품 및 음료제품이 가장 많으며 平均損害額의 占有比는 자동차·부품(20.3%), 처방약(18.9%), 트랙터 및 트럭(12.4%), 기계류(10.9%)순이다. 또 평균배상액이 가장 많은 제품은 처방약이 약 17만 달러로 가장 높고 대체적으로 기계류 제품도 높은 편이나 식품 등은 사고건수에 비해 낮은 편이다.

對物賠償事故의 경우 지급건수는 주로 기계류인 자동차수리, 자동차부품, 타이어, 연료 등이 높고, 평균배상액의 점유비는 자동차 및 부품(21.4%), 트럭 및 트랙터(12.4%), 석유(10.7%)가 거의 50%를 차지한다. 평균배상액은 트럭(약3만 5천달러), 化成品, 전기 기계설비, 페인트 등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연료, 세제, 비누, 소프트음료(596달러) 등은 낮은 수준이다.

<表 Ⅲ-8> 제품별 평균배상액 분포

(단위 : 건, %, 달러)

대인사고				대물사고			
제품명	지급건수	평균배상액	합계비율	제품명	지급건수	평균배상액	합계비율
식품(포장)	1,228	563	0.8	자동차수리	800	568	2.50
육류제품	974	621	0.7	자동차,부품	292	13,134	21.40
소프트음료	606	1,921	1.4	타이어	245	3,137	4.30
빵,과자	505	420	0.3	연료(휘발유)	205	415	0.50
커피	363	619	0.3	납관	173	3,571	3.40
수산물	284	471	0.2	석유(공업용)	161	11,917	10.70
자동차,부품	264	64,091	20.3	지붕부착물	102	11,551	6.60
유리병,도자기	161	11,954	2.3	세탁기	98	1,887	1.00
피임기구	154	15,779	2.9	건설	95	9,115	4.80
낙농제품	133	763	0.1	가스히터	91	4,242	2.20
기계류	131	69,718	10.9	공조설비	84	850	0.40
냉동제품	124	508	0.1	가정용클리너	79	355	0.20
맥주	121	4,182	0.6	동물용식품	79	2,786	1.20
트랙터,트럭	112	92,405	12.4	전기기계설비	75	13,245	5.50
캔식품	112	730	0.1	식품(포장)	74	14,821	6.10
과일,야채류	106	366	0.0	세제,비누	73	126	0.10
화장품	104	1,435	0.2	트랙터,트럭	64	34,755	12.40
치약	92	171,173	18.9	오일필터	63	1,481	0.50
신발류	90	3,785	0.4	소프트음료	62	596	0.20
의료기기	88	53,328	5.6	냉장고	61	3,106	1.10
타이어	80	77,480	7.4	히터설비,수리	60	3,686	1.20
의자	75	26,434	2.4	화성품	56	26,880	8.40
화성품	69	91,584	7.6	기타서비스	54	4,875	1.50
조류고기	66	939	0.1	그릇세척기	51	426	0.10
스포츠용품	62	54,307	4.0	페인트등	51	12,860	3.70
합계	8,359	26,041	100.0	합계	5,140	6,933	100.00

자료 : 大羽寫一, 「米國の生産物賠償責任と懲罰賠償」, 日本經濟新聞社, 1991, pp.115-116

이와 같이 對物事故나 對人事故에서 기계제품 분야의 평균배상액이 큰 것은 勤災補償制度和 관련이 있다. 근재보상제도는 州別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州는 勤災補償法(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 보험가입이 義務化되어 있다. 勤災保險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過失有無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부가 주어지고 있으나 이 수준이 매우

낮아, 死亡保險金이 2만불에 불과한 州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州에서는 勤災補償法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근로자는 중복하여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單一給付의 原則(Sole Remedy Rule)”을 채택하고 있어서 재해보상액이 적어도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 등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기계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사유로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가 無保險이거나 賠償資力이 不足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자동차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2. 유럽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 運營現況

가. 유럽의 生産物賠償責任法理

유럽의 경우 종래 회원국간 生産物責任에 관한 法制의 차이때문에 제조업자의 경쟁 조건에 格差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EC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제품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EC역내에서의 경쟁조건 동일화, 교역 촉진, 피해자 구제등을 위하여 EC역내의 生産物責任에 관한 統一立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C각료이사회는 生産物賠償責任에 관한 EC가맹국의 입법의 통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缺陷生産物賠償責任 指針案을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1979년 9월 19일에 공표했다. 1985년 7월 25일에는 “결합제품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각료이사회지침(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을 채택하여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각 가맹국에 통보하였다. 또한 각 회원국은 EC의 지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즉 1988년 7월

30일까지는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國內法을 정비하여 시행토록 하였다.⁴⁰⁾

동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결함상품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EC와 유럽자유무역연맹(EFTA : European Free Trading Association) 간의 통합작업과 1990년 동구유럽의 정치대변혁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제조업자에게 결함상품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였다.

1) 主要内容

生産物賠償責任에 관한 EC지침은 全文과 22개의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生産物 배상책임에 관련되는 주요 조문은 아래와 같다.

가) 제조자의 책임(제1조)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했는데 미국에서의 엄격책임과 같은 無過失責任을 채택하고 있다(The producer shall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his product).

나) 적용대상제품(제2조)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動産(all movables)을 포함하나 가공되지 않은 제1차 農産物(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및 狩獵物은 제외된다. 그러나 가맹국의 선택에 따라 제1차 農산물 및 수렵물도 포함할 수 있으며 전기(electric power)를 포함한다.

다) 제조업자의 의의(제3조)

제조업자(producer)라 함은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생산자, 구성부품의 제조자 및 제품에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업자로 표시

40)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op. cit.*, p.603

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매매, 임대차, 리스,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유통시키거나 EC국가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사람은 제조업자로 간주하며 제조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공급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제4조)

本條는 제1조의 규정과 함께 본 지침이 無過失責任主義를 채택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엄격책임법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마) 연대책임(제5조)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連帶責任(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거나 자유이므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바) 제품결함의 개념(제6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기 위한 법리로서 무과실책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결함의 존재는 生産物賠償責任法상의 불가결한 전제이며, 이른바 절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결함없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결함이 있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조에서는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의 사용, 제품이 유통에 들어간 시기”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安全性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 消費者期待基準(consumer expectation test)을 규정하고 있다(defective when it does not provide the safety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expect,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account, including presentation of the products; the use to which i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hat the products would be put and the time when the product was put into circulation).

또한 동조 후항에서는 "state of the art (development risks)"에 관하여 제품이 유통된 후 보다 우수한 제품이 나왔다는 것만을 이유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면책사유(제7조 및 제8조)

7조는 제조업자의 항변으로서 開發危險의 抗辯(development risk)을 포함하는 6개의 사유⁴¹⁾를 열거하고 이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면 제조업자의 責任이 免除됨을 규정하고 있다.

8조는 손해발생에 있어서 제품의 결함과 제3자 또는 피해자 등의 과실행위가 경합된 경우의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제3자의 行爲나 不作為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지만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할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피해자측의 寄與過失(contributory negligence)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 피해의 범위(제9조)와 책임한도액(제16조)

본 지침 제9조는 신체장해손해(personal injury, death) 및 재산상의 손해를 7천만 EC

41) 즉, 「①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② 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물이 유통될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조물의 유통 이후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조물이 판매 또는 기타 경제적 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고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닌 경우 ④ 제조물의 결함이 공공기관에 의해 제정된 규제를 충족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⑤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켰을 당시의 과학·기술적 지식으로는 결함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⑥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결함이 그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설계에 기인하거나 제품제조자의 지시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항을 입증하면 면책으로 한다.

U(약 692억 9천만원)까지만 인정하며, 재산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한 품목(ordinary intended for private use or consumption),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한 품목(used by the injured person mainly for his private use or consumption)"에 대하여는 500ECU(약 49만원)를 면책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無形의 損害(non-material damage)는 각 가맹국의 처리에 맡기기로 하였으며, EC가맹국 중 지금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16조는 동일한 결함이 있는 同種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장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最高責任限度額을 7,000만 ECU(약 692억9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한도액을 제한할 수 없다.

자) 책임기한 (제10조)

EC지침은 생산물 賠償責任提訴의 기간제한으로 2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短期消滅時効는 피해자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起算하여 3년 이내 提訴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조에서는 法定責任期間(Statute of Repose)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입법화 현황

입법화 현황을 보면 EC국가 중 영국이 가장 먼저 국내법으로 입법화하였으며 12개국 중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입법화를 모두 끝마친 상태이다. 영국의 경우 消費者保護法(consumer protect act 1987)에 EC 生産物指針을 입법화하여 1987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表 III-9> EC 및 EFTA 가맹각국의 제조물책임 입법현황('95. 12말 현재)

가맹국		입법	입법화상황	선택조항의 도입내용		
				제1차농산물 ·수렵물	개발위험의 항변	신체장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E U	영국	소비자보호법	'87. 5.15 제정 '88. 3. 1 시행	×	채 용	×
	그리스 ¹⁾	제조물책임법	'88. 3.31 제정 '88. 7.30 시행	적 용	채 용	설정(72억384만드 라크마)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대통령령	'88. 5.24 제정 '88. 7.30 시행	×	채 용	×
	룩셈부르크	제조물책임법	'89. 4.21 제정 '89. 5. 2 시행	적 용	×	×
	덴마크	제조물책임법	'89. 6. 7 제정 '89. 6.10 시행	×	채 용	×
	포르투갈	제조물책임법	'89.11. 6 제정 '89.11.21 시행	×	채 용	설 정 (100억에스쿠도)
	독일	제조물책임법	'89.12.15 제정 '90. 1. 1 시행	×	채 용 (의약품제외)	설 정 (1억6천만마르크)
	네덜란드	민법개정법	'90. 9.13 제정 '90.11. 1 시행	×	채 용	×
	벨기에	제조물책임법	'91. 2.25 제정 '91. 4. 1 시행	×	채 용	×
	아일랜드	제조물책임법	'91.12. 4 제정 '91.12.16 시행	×	채 용	×
	스페인	제조물책임법	'94. 7. 6 제정 '94. 7. 7 시행	×	채 용(의약품, 식품제외)	설 정 (105페세타)
	프랑스	민법개정법안제출		-	-	-
E F T A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	'88. 1.21 제정 '88. 7. 1 시행	×	채 용	×
	노르웨이	제조물책임법	'88.12.23 제정 '89. 1. 1 시행	적 용	×	×
	핀란드	제조물책임법	'90. 8.17 제정 '91. 9. 1 시행	적 용	×	×
	스웨덴	제조물책임법	'92.12.17 제정 '93. 1. 1 시행	적 용	채 용	×
	아이슬란드	제조물책임법	'91. 3.20 제정 '92. 1. 1 시행	적 용	채 용	설 정 (7000만ECU)
	스위스	제조물책임법	'92.10. 9 제정 '94. 1. 1 시행	×	채 용	×
	리히슈타인	제조물책임법	'92.11.12 제정 시행일은불명	×	채 용	×

주 : 1)1994년 11월 법개정시 한도액이 폐지되었음.

자료 : 1) 「Product Liability Law Liability Insurance」, 損保學雜誌 제549호, 1995.

2)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l, 「Internation Product liability」,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입법화한 후의 유럽국가에서 발생한 生産物賠償責任 訴訟은 독일 2건, 이탈리아 1건 등 총 3건⁴²⁾에 불과하다. 또한 동 지침 작성시 최후까지 각국의 의견이 대립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채택여부를 각국의 판단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이 선택조항(optional articles)은 지침 발효 10년후에 실시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제2조의 未加工農産物과 狩獵物을 포함(제5조(a)호)하고 있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 4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 ② 開發危險의 抗辯에 대한 採擇與否(제15조(b)호)를 살펴보면, 룩셈부르크,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페인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排除시켰다.
- ③ 동일한 결합상품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7천만 ECU(약 692억 9천만원)의 책임 한도액 설정(제16조)에 대하여는 포르투갈(100억에스쿠도: 약 514억원), 독일(1억6천만마르크: 약 861억원), 스페인(105억페세타: 약643억원), 아이스란드(7천만ECU)만이 설정하였다.

나. 유럽 主要國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 運營現況⁴³⁾

42) 독일의 경우 2건 모두, 재물손해로서 첫 번째 소송은 크리스마스장식용 양초사건(양초결함으로 의복, 방, 천정, 벽, 테이블등이 그을려 재산피해를 본결과 소송이 제기됨. 재판부는 소매업자에게 12,560마르크를 배상판결함, 1991년 7월 31일), 두 번째는 목제품보호도료사건(라벨의 표시색과 실제색이 차이나는 것을 이유로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제기한 결과 사용자가 사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기여과실 50%를 인정한 판결, 1992.7.14). 이탈리아의 경우는 산악용자전거 탑승중 자건구조가 갑자기 해체된 결과, 탑승자가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로 제조자는 부상자에게 28일간의 일시적 장애와 3#의 후유장해를 포함한 인체손해배상금 1,500만리라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上原弘史, “採擇から10年が経過したEU生産物賠償責任指令”, 「安全總研クオ-タリ-」, Vol. 17, 1996. 6, pp.19

43) 安全總合研究所, 「生産物賠償責任」, 東京 有斐閣, 1994 에서 각국의 자료를 정리하였음.

1) 英國

가) 保險約款

영국의 生産物賠償責任은 유럽의 生産物指針을 근거로 1987년에 消費者保護法(consumer protect act 1987)에 입법화한 것으로 제조업자 등에게 엄격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위험은 Public Liability Policy로 담보되며 보험약관은 Commercial Combined Liability Policy(section 2 Public/Products Liability) 또는 Commercial Combined Policy(section 1 public liability)⁴⁴⁾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단독 실적은 공표된 것이 없는 관계로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의 시장처럼 전체 손보시장의 0.8%를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약 332백만파운드(약 4,039억원)의 규모로 추정된다.

<表 III-10>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실적
(단위 : 백만파운드, %)

년도	전체손해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1989	27,659	10.0	100	1,890	6.7	6.8
1990	30,730	11.1	100	2,102	11.2	6.8
1991	34,711	13.0	100	2,077	-1.2	6.0
1992	40,766	17.4	100	2,237	7.7	5.5
1993	42,147	3.4	100	2,546	13.8	6.0
1994	41,530	-1.5	100	2,864	12.5	6.9

자료 : ABI,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84-1994

보험약관은 각 보험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작성·사용하고 있어 통일적인 형태는 존

44) Commercial Combined Policy의 구성은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package화한 것으로 총 7개 section(1:public liability, 2:employers' liability, 3; fire and special perils, 4:theft, 5:business interruption, 6:money, 7:glass) 으로 구성하고 각section별로 보험계약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Digghy C. Jess, *The Insurance of Commercial Risks Law and Practice*, 2nd Ed., London, 1993, pp.113-127

재하지 않지만 약관의 기본적인 사항, 즉 생산물배상책임위험의 취급, 면책사유, 보상한도액의 설정방식 등에 대하여는 각 보험회사가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다. 擔保方式에는 손해사고기준 증권과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이 있는데, 前者의 경우는 영국내生産物에 적용하며 後者는 미국과 캐나다로의 수출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補償하는 損害

영국내에서 賠償責任理論에 의거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중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면 다음표와 같다.

<表 III-11> 영국의 보상손해 유형별 근거법규

손해종류	계약책임	과실책임	1987소비자보호법
인체손해	○	○	○(1)(5)
재산손해	○	○	△(7)
징벌적손해	×(2)	△(3)	△(1)(3)
인격(감정)손해	×(예외:(4))	△	△(5)
경제적손해	○	×(6)	×(5)
회수수리비용	○	×(8)	×(7)

주 : ○는 보상, ×는 불보상, △는 제한적 보상, ()의 숫자는 근거법조항임
 자료 :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op. cit* , p.20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生産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身體障害 또는 財物損害에 대한 賠償金 및 클레임 해결에 관한 爭訟費用을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경우,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의 결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보상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리·교체비용 및 그 사용불능에 의한 손실, 회수비용은 免責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免責事項에 대하여 극히 限定的이지만 Product Gurantee Insurance와 Recall Insurance로 담보하고 있다.

다) 補償限度額

消費者保護法上에서는 제조업자의 責任限度額을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약관에서는 總補償限度額(aggregate limit)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손해와 재물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爭訟費用은 보상한도액과 관계없이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상한도액은 제조업체의 생산물종류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적인 한도액은 100만파운드 정도이다.

라) 保險料率

보험요율은 각 보험회사가 자유재량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自由料率이다. 보험요율의 산출기초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제조업체의 年間 賣出額이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요율적용의 위험분류는 크게 제조업자·원재료공급자 및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구분하고 제품별 배상책임의 상대위험도(relative hazard)에 따라 7개 제품그룹으로 나누어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1: 종이류, 도자기류, 2: 음료 및 식품, 3: 공업제품(engineering product), 4: 전기제품, 5: 자동차, 크레인, 기타건설장비, 6: 동물사료, 가스용기, 화약, 농업화학품, 7: 의약품, 항공기제품, 혼합콘크리트)⁴⁵⁾.

2) 獨逸

가) 保險約款

독일은 生産物賠償責任法の 施行 이전부터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약사법 등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었으며 1990년 1월부터 EC의 生産物責任指針에 의한 生産物賠償責任法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법간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또 제조업자의 生産物責任은 生産物賠償責任法과 민법의 조합, 약사법과 민법의 조합 혹은 이들 3개법 각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45) CII, *Associateship: Liability Insurance Practice*, 1995, pp.8/6

<表 Ⅲ-12> 독일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

구분	제조물책임법(1990.1)	민법 제823조	약사법 제84조(1976.8)
적용대상 제조물	모든제조물(단,제1차농산물,수렵물, 약사법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제외)	모든 의약품을 포함한 전 제조물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약품
기본항목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약사법에서 정의한 제조물의 결함	의약품의 결함
	인체손해: 사적사용만(1억6천만마르크한도) 타인의 재물손해(1,125마르크면책)	인체손해, 재산손해	인체손해만(1사고당 2억마르크한도, 1인당 50만마르크)
	금전적손해(위자료 등의 무형적손해는 제외)	금전적손해(위자료 등의 무형손해)	금전적손해(위자료 등의 무형손해제외)
인과관계	무과실	과실(과실,부주의 혹은 의도적인 비행)	무과실

자료 :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生産物賠償責任制度導入の影響・歐州調査報告」,東京:大蔵省印刷局,1994.6,pp.109

독일의 보험약관은 統一約款의 형태로서 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 für die Haftpflichtversicherung(General Insurance Conditions for Liability Insurance: 일반배상책임보험, 통상 “AHB”라 불림)이 있다. AHB에서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특별히 다른 배상 위험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담보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처럼 생산물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AHB의 담보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Besondere Bedingungen und Risikobeschreibungen für die Produkthaftpflichtversicherung vonindustrie (Special Conditions and Risk Description for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of Industrial Undertakings and Business Engaged in the Distributive Trade: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모델」이라 함)를 특약(extended coverage)의 형태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생산물보험시장 규모도 영국과 같이 미국의 손보시장점유율 0.8%를 적용하여 추정하여 보면 약 10억마르크(약 5,381억원)정도이다.

<表 Ⅲ-13> 독일의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실적

(단위 : 억마르크, %)

년도	전체손해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1989	807	6.0	100	-	-	-
1990	834	3.4	100	71	-	8.5
1991	972	16.5	100	85	20.5	8.8
1992	1,067	9.8	100	92	8.3	8.6
1993	1,179	10.4	100	101	9.8	8.6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86-1993*, 1995.

나) 補償하는 損害

보상하는 손해는 身體障害 또는 財物損害에 대한 배상금 및 클레임해결에 관한 爭訟費用이 보상된다. 신체장애·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純粹 經濟的 損失도 特約에 의해 보상된다.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수리·교체비용 및 그 사용불능에 의한 손실과 recall비용은 면책으로 되어 있지만 특약(생산물배상책임모델)을 첨부한 경우 일부 한정적으로 보상되고 있다.

다) 補償限度額

독일에서는 身體障害와 財物損害에 대한 보상한도를 각각 분리하여 1사고당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總補償限度額は 미국과는 다르게 순수 경제적 손실 등 특약담보 보상액에 한정하여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生産物賠償責任法에서는 신체장애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1억 6천만마르크(약 861억원)로 설정하고 있어 이 이상의 한도액설정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비용 등의 爭訟費用은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상한도액은 기업의 규모 및 생산제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는 신체장애 100만~300만마르크, 재물손해 30만~100만마르크 정도이며 대부분 1억마르크 이하이다.

라) 保險料率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行政(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보험에 관한 연방감독청, 통상 B.V.A.이라 함)監督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요율은 보험협회(HUK Verband)가 4년~6년의 주기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각사는 이를 참고로 하여 자사의 요율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험요율의 가이드라인은 Tarif für die Allgemeine Haftpflichtversicherung(Tariff for General Liability Insurance)라고 불리며, 보험약관상 기업의 일반배상위험과 생산물배상책임위험을 구분하지 않고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물배상책임위험만의 보험요율은 게재되어 있지 않다.

3) 프랑스

가) 保險約款

프랑스는 EC生産物指針을 아직까지 입법화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하여 民法上の 契約責任法理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生産物指針을 수용한 민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결국에는 프랑스도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하여 嚴格責任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물배상책임은 별도의 독립된 보험약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일부로서 담보되고 있다. 각 보험회사는 프랑스 보험협회에서 작성한 標準約款을 참고로 하여 자사의 보험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된 형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약관구성은 미국의 1986년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과 같이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Part I (Responsabilité Civile Exploitation Public Liability)은 보험계약자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및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배상위험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담보부분이며 Part II (Apr-

ès Livraison/Après Achèvement des Travaux-Product and Completed Operation Liability)는 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별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일반적인 약관 형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담보하는 리스크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 면책조항을 첨부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保險加入率은 대기업의 경우 제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체의 25%정도만이 보험부보를 하고 있어 대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表 III-14> 프랑스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실적

(단위 : 억프랑, %)

년도	전체손해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1989	1,723	5.6	100	77	4.0	4.5
1990	1,826	6.0	100	85	10.3	4.7
1991	1,908	4.5	100	88	2.9	4.6
1992	2,038	6.8	100	118	34.7	5.8
1993	2,158	5.9	100	118	0.1	5.5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86-1993*, 1995.

나) 補償하는 損害

다른 국가와 같이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爭訟費用은 기본적으로 담보하며 經濟的 損害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의 결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또한, 결함제품의 수리·교환비용 및 그 使用不能에 의한 損失과 回收費用은 免責으로 되어 있다.

다) 補償限度額

補償限度額은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1사고당 한도액과 총보상한도액을 설정한다. 塲송비용은 독일, 영국과는 다르게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상되는 것이 일

반적이며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보상한도액 이하의 금액에서 신체 및 재물손해의 보상한도액과는 별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라) 保險料率

보험요율은 일반적으로 각 보험회사의 自由料率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프랑스 보험협회가 提示하는 勸告料率(advisory rate)을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산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할 法的 拘束力은 없다.

4) 이탈리아

가) 保險約款

이탈리아의 生産物賠償責任法(Directive through Presidential Decree(DPR) 224)은 EC의 생산물지침을 수용하여 198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의 보험약관과 요율은 전체보험회사의 약 90%가 회원인 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Association of National Italian Insurance: 이탈리아 보험협회, 통상 ANIA라 함)에서 1973년 이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는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배상책임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영국, 독일과는 달리 별도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존재하며, 담보형태는 주로 손해배상청구기준을 취하고 있다.

<表 Ⅲ-15> 이탈리아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실적
(단위 : 억리라, %)

년도	전체손해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1989	223,720	13.0	100	14,553	15.9	6.5
1990	255,093	14.0	100	16,553	13.7	6.5
1991	291,578	14.3	100	18,742	13.2	6.4
1992	328,452	12.6	100	21,212	13.2	6.5
1993	351,102	6.9	100	23,293	9.8	6.6

자료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 Book 1986-1993, 1995

나) 부보율

이탈리아 보험협회(ANIA)에 의하면, 1986년도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가입건수는 약 700건에 불과하고 협회의 비회원 보험사가 인수한 건수를 포함해도 약 1000건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에는 약 10만의 제조업자가 존재하지만, 부보율은 1% 정도로 극히 낮으며 전체 손해보험의 보험료대비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험료 占有比는 약 2%(약 3,323억원)⁴⁶⁾를 달하고 있다.

다) 補償하는 損害

보상하는 손해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클레임 해결에 필요한 爭訟費用이 보상된다. 경제적 손해는 현재 모두 면책으로 되어 있지만, 今後 보상한도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보상하는 형태로 개정될 예정이다. 결함제품에 대한 수리·교환비용 및 그 사용불능에 의한 손실, 회수비용은 면책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최대 특징은 본 보험의 대상이 제조업자에 한정되고 판매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표현을 Products Liability 대신 Producers' Liability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수입업자 등의 책임은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아니라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라) 補償限度額

補償限度額は 身體損害와 財物損害에 대한 1사고당 한도액을 설정하며, 총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한도액의 2배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爭송비용은 신체손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25%내에서 보상된다. 自己負擔金은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할

46) $351,102\text{억리라} \times 2\% \times 771.27 / 1629.6$

금액의 10%로 되어 있어 타국가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평균적인 보상한도액은 10억리라 정도이지만,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30~50억리라의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마) 保險料率

보험요율은 보험협회(ANIA)가 산출한 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험구분을 製品別로 달리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 生産物賠償責任法이 保險制度에 미치는 影響

1)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安定的 供給

EC지침에 의해 제품의 제조 또는 공급자가 嚴格責任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1985년부터 1986년에 걸쳐 미국에서 발생했던 보험위기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보험위기가 발생했던 것은 嚴格責任法理 뿐 아니라 辯護士의 문제와 陪審制度, 懲罰的 賠償金制度, 社會保障의 不充分性, 보험회사간의 過當競爭이라는 미국 고유의 사정에 기인하였으나 EC 각국의 경우 그러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C지침의 검토과정에서 유럽 보험협회는 EC 위원회측에 「엄격책임이 도입되더라도 제조업자가 지불가능한 보험료만으로 보험회사는 적절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 保險料率

EC지침에 의한 국내법의 입법화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한 선전효과(announcement effect) 등에 의해 클레임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오스트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대략 10%~30%의 料率引上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⁴⁷⁾ 이러한 가운데 현재 각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료 수준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당분간은 종전의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평가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화와 더불어 즉각적인 요율의 인상을 보류한 이유로서 ① 통계적으로 인상율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②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일반적으로 심하다는 것 ③ 제조업자 등이 엄격책임을 부담함으로써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부보율이 상승하고 또한 역선택(위험한 제품만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는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벨기에, 이탈리아 등 부보율이 낮은 국가의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네덜란드만은 보험협회가 공식적으로 요율의 인상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의 위험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제1그룹은 보류, 제2그룹은 7.5% 인상, 제3그룹은 15% 인상으로 정하고 있다.

3) 補償限度額

제조업체는 엄격책임부담에 대한 대책으로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상한도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험료는 통상 “제품마다의 요율×보상한도액의 계수×연간매출액”으로 계산되는데, 이 의미는 개개의 기업이 종래와 동액의 보상한도액을 유지한다면 적용하고 있는 보험요율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승되지 않겠지만 補償限度額을 増額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47) 오스트리아의 경우 신제조물책임법도입으로 보험사업자들은 계약자들의 보상한도액 인상등으로 보험요율이 30%정도까지 인상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1995, p.37

법정책임한도액의 上限을 설정한 국가에서는 보험부보시 法定上限金額(통상은 7,000만 ECU)까지 보상한도액을 인상하여 부보하는 경향⁴⁸⁾이 늘고 있지만, 제조업체 등 기업측에서는 보험료 비용증가가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재보험 Capacity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4) 保險約款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EC지침의 영향을 받아 각 보험회사가 새로운 법리에 맞추어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약관을 보완하거나 통일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영국과 독일의 경우 새로운 법내용에 상응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조건 등에 대해 중요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EC 손해보험지침에 의거 소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기업의 경우 1993년 1월 이후부터 EC域內에서 국외 직접부보(cross-border)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다국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각국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할 필요없이 가장 유리한 보험조건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후 保險約款 뿐만 아니라 각국의 行政監督制度 등의 統一化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기 타

EC지침상에는 賠償責任履行確保手段으로서 강제보험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民營保險 또는 自家保險을 통해 기업체 스스로가 배상책임이행 확보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1988년 7월에 제정한 법에서 배상책임 이행확보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⁵⁰⁾ 또한 스페인은 소비자보호법(LGDCU:

48) 독일의 경우 법정책임한도액이 하나의 제품으로 인한 인적손해에 대해 1억 6000만마르크로 되어 있어 이미만의 보상한도액으로 보험가입한 기업체는 상한까지 늘리는 경향이 있다.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生産物賠償責任制度導入の影響(歐州調査報告書)」, 1993. 6, pp.70

49)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p.37

the General Law of the Defence of Consumers and Users) 제28조에 의거 극히 위험한 生産物에 한정하여 엄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조자에게 배상책임이행확보수단으로서 강제보험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⁵¹⁾

EC역내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EC내 수입업자로부터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험증권을 요구받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EC역내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EC지침 제3조 제2항), 만일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본래의 제조자인 수출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求償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日本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 運營現況

가. 生産物賠償責任法理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는 製造物責任法이 입법시행되기 전까지는 민법 709조의 過失責任法理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충분히 救濟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75년 민법학자로 구성된 製造物責任研究會에서 製造物賠償責任法要綱試案을 작성하여 발표한 이래 2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관련기관간⁵²⁾ 논의

50)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op. cit.*, p.66

51) 극히 위험한 제조물은 영양제, 세정제, 화장품 및 의약품, 위생제품, 가스 및 전기서비스업, 엘리베이터, 전기가전제품, 운송장비, 자동차, 장난감 등의 어린이용 제품,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op. cit.*, pp.511

52) 自由民主黨은 '92년 10월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중간결과의 발표, '94년 3월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였고, 公明黨은 '93년 5월 衆議院 법무위원회에, 社會黨은 동년 6월 參議院 법무위원회에 각각 제조물책임법안을 제출했음.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 긴급한 과제인 生産物賠償責任制度를 중심으로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방지·구제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92년 10월 중간보고하였고, '93년 10월 「綜合的인 消費者被害防止・救濟對策에 對하여」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1993년 11월 25일 국민생활심의회는 총리에게 이와같은 검토결과를 반영한 「餘裕, 安心, 多様性 있는 國民生活을 실

를 거쳐 1994년 6월 22일 국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 제85호로 성립하게 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表 III-16>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입법안의 비교

구 분	生産物賠償責任研究會 (75년 8월)	私法學會 報告書 그룹 (90년 10월)	日本辯護士 聯合會 (91년 3월)	東京辯護士會 (91년 1월)	公明黨 ¹⁾ (92년 5월)	社會黨 ¹⁾ (92년 6월)	國民生活 審議會 (93년 12월)	共產黨 (94년 4월)	生産物 賠償責任 (94년 7월)
입격책임도입여부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입격책임
결함의 판단기준	상당하지 않는 위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마땅히 기대하여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마땅히 기대하여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마땅히 기대하여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이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단, 판단의 기준, 요소는 명확화함이 바람직함)	소비자가 마땅히 기대하여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단, 제조물의 특성, 사용형태, 인도된 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
결함의 추정규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²⁾	불인정	인정	인정하지 않음
인과관계의 추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²⁾	불인정	인정	인정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불인정	인정하지 않음	인정	불인정	인정
부동산의 포함 여부	포함	포함되지 않음	포함 (미가공부동산은 제외)	포함(미가공부동산은 제외)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포함	포함되지 않음
미가공 제1차농산물	포함되는 것도 있음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되지 않음	불포함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판매자도 제조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	부담함(단, 특별한 변호사유를 인정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부담함(단, 특별한 변호사유를 인정함)	부담함(단, 특별한 변호사유를 인정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부담하지 않음
대인배상책임의 상한 설정여부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정별적손해배상금 인정여부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손해액의 2배한도)	인정(손해액의 2배한도)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과실상계·증과실에 한정	한정함	한정함	한정함	한정함	한정하지 않음	한정함	한정하지 않음	한정함	한정하지 않음
법적책임기간의 설정	설정하지 않음	설정함(원칙적으로 20년)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설정함(원칙적으로 20년)	설정함(10년)	설정함(20년. 단, 즉적손해는 제외)	설정함(10년. 단, 즉적손해는 손해발생시부터 기산)

주 : 1)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안되었음.

2) 결함의 추정규정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자료 : 猪尾和久, 「生産物賠償責任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95.4, pp.76

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製造物責任法の 제정배경은 최근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國民生活意識의 向上 및 消費者保護主義의 급속한 발전, 公的規制의 緩和에 따른 事業者의 自己責任原則 強化, 제품수입의 대폭적인 증가, EC지침에 의한 구미 국가들의 製造物責任法 立法義務化의 進展 등 國內外 環境變化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生産物責任法은 기본적으로 EC의 生産物責任指針과 유사하나 被害者救濟面에서 미 국가나 EC국가와는 달리 消費者被害補償論이 아니라 日本의 獨特한 損害論을 채택하고 있다. 製造物責任法에서는 소비자피해만이 아니라 사업자손해 및 기업의 喪失收益損害까지 無過失責任으로 保護하고 있다.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입법완료될 때까지 제안된 각종 법안들을 비교하여 보면 <表 III-16>과 같다.

製造物責任法은 전체 6개조항과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조(目的)

製造物の 缺陷으로 因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하므로써 被害者를 保護하고 나아가 國民생활의 安定性 향상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 제2조(定義)

製造物이란 製造 또는 加工한 動産을 말하며, 不動産, 有體物이 아닌 에너지와 서비스, 未加工動産(未加工農産物)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품과 부품, 원재료, 수혈용혈액제재, 생약진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기는 포함된다. 缺陷이란 당해 生産物の 特性, 通常 豫見되는 使用形態, 제조업자가 生産物을 인도할 시기 및 그밖에 生産物과 관련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生産物이 通常 지녀야 할 安定性を 缺如한 境遇를 말한다. 그 판단요소로서는 “① 해당生産物の 특성 ②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③ 제조업자 등이 해당 生産物을 건네준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製造業者 等이란 ① 당해 生産物을 業으로서 製造, 加工 또는 輸入한 자, ② 자신이

당해 生産物의 제조업자로서 姓名, 商號, 商標 그 밖의 標示를 한 자 또는 當該 生産物에 제조업자로 誤認케 하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③ 당해 生産物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한 형태 또는 그밖의 사정에 비추어 당해 生産物에 實質的인 製造業者로 認定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OEM제품⁵³⁾의 공급처와 대형 유통업자의 PB(Private Brand)상품⁵⁴⁾의 판매원도 책임주체가 된다.

③ 제3조(生産物賠償責任)

제조업자 등이 生産物의 缺陷으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侵害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손해가 해당 生産物에만 생긴 경우에는 生産物責任의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산 등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는 해당 生産物의 손해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④ 제4조(免責事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등이 ① 당해 生産物을 제조업자가 引導한 時點의 科學이나 技術水準에 비추어 당해 生産物에 缺陷이 있었다는 事實을 認識할 수 없거나 (開發危險의 抗辯: development risks) ② 당해 生産物이 다른 生産物의 部品이나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 缺陷의 原因이 전적으로 完製品製造業者의 設計上 瑕疵로 인해 발생했으며 缺陷發生과 관련하여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負擔하지 않는다.

⑤ 제5조(期間의 制限)

損害賠償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賠償義務者를 안 때로부터

53)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자)방식은 자기가 제조하는 제조물에 타인의 상표를 붙여 타인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서 결합제조물 사고시 OEM 방식의 제조업자에 관하여는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고 제조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지수현, 전제서, pp.288

54) PB(Private Brand)란 주로 제조업자에게 발주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 유통업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유통업자로 표시하였다고 해도 그 표시자의 의사가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여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책임주체에 포함한다. 제일화재 일본보험연구회 옮김, 「알기쉬운 PL법해설」, 21세기북스, 1995.5.12, pp.70

10년 이내에 行使하지 않으면 消滅된다. 다만, 身體에 蓄積되는 경우 健康을 해치는 物質에 의한 손해나 一定期間의 潛伏期를 거친 후에 비로소 症狀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⑥ 제6조(民法의 適用)

生産物の 결함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에서 同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법률의 시행후에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生産物에 한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중에 있다.

나. 保險制度 運營現況

1995년 7월 1일부터 嚴格責任法理를 도입하여 시행된 日本의 製造物責任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는 달리 賠償履行의 手段, 즉 보험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1960년대부터 존속해 왔기 때문에 이미 大衆化되어 있고 미국·EC지침 등에서도 배상이행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은 제조업체가 개별로 가입하는 경우와 동일업종의 단체 또는 안전마크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업계는 製造物責任法의 도입으로 새로운 保險需要가 創出되고 收益機會가 提供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製造物責任에 대한 動向과 그 對應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보험이외에 1995년 4월 동경해상이 개발한 중소기업 生産物賠償責任保險과 일본내에 진출한 AIU, Royal, BIG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1995년 9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PRPL보험(Preferred Risk Product Liability)등이 있다.

1) 生産物賠償責任保險

가) 保險約款

일본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크게 國內用과 海外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사용하는 약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국내용은 사고발생지가 일본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약관으로서 1957년에 일본어약관으로 도입되었으며, 기본적인 보험내용은 해외용약관과 동일하며 賠償責任保險 普通約款(General Liability Insurance Standard provision)에 生産物特別約款(Products & Completed Operation Coverage Part)과 추가특약조항(예: Punitive Damage Exclusion)을 첨부하여 담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해외용 약관은 해외 수출제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973년 ISO의 표준약관을 도입하였으며 일명 輸出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라고도 한다.

<表 III-17>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실적

(단위 : 억엔, %)

년도	전체손해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生産物賠償責任保險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¹⁾	증가율	점유비
1989	85,957	5.3	100	1,782	+12.2	1.9	169	7.0	0.2
1990	89,242	3.8	100	2,024	+13.6	2.3	185	9.5	0.2
1991	91,863	2.9	100	2,164	+6.9	2.4	204	10.3	0.2
1992	93,228	1.5	100	2,310	+6.7	2.5	220	7.8	0.2
1993	99,072	6.3	100	2,365	+2.4	2.4			
1994	99,281	0.2	100	2,488	+5.2	2.5			

주 : 1)生産物保險의 보험료는 일본손보협회가 제공한 것으로 국내제품에 관한 실적임.

자료 : 日本損害保險協會, 「1994 日本の損害保險」, 1995.1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통계는 없지만 生産物賠償責任法の 입법화과정에서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전체 손해보험실적(저축성제외)의 0.3%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도의 경우 계약건수는 12만건, 보험료는 184억 6천 만엔이었다고 한다.⁵⁵⁾ 보험업계는 동 보험이 전체 손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극히 미미하므로 製造物責任法の 시행 등의 효과로 인하여 收入保險料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⁶⁾

나) 부보율

보급율은 현재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1986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39.2%로 나타났다. 또한 製造物責任의立法에 대한 국회심의시 중소기업의 보급률은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체의 보험가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보상하는 손해

생산물책임보험은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기본적으로 담보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爭訟費用도 보상한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經濟的 損害(積極的 損害로서의 치료비, 입원비나 소극적 손해로서의 逸失利益) 및 非經濟的損害(精神的 損害로서의 慰藉料)가 주이고 연체이자나 현물급부도 포함한다. 損害防止輕減費用 즉, 피보험자가 사고의 발생을 안 때 손해방지, 경감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절차를 취하는 데 소요된 비용도 보상한다. 기타 비용으로서 보험목적물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소송·중재·화해 혹은 조정과 관해서 사

55) 落合誠一, "PL保險の現想と課題", 「保險學雜誌 第540號」, 1994.3, p.70

56) 小西一生, 「PL對策のすべて」, 동경 중경출판, 1994.1, pp.191

전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며 또한 保證(공탁보증, 차압보증) 관련 보험료와 사고처리에 대한 조사, 방어 등 보험사에 협력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의 협력비용도 보상한다.

라) 補償限度額

일본의 生産物賠償責任法上 法定補償限度額は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은 보험자와 계약자가 약정하여 설정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의 시점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손해를 입을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保險價額は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一部保險, 超過保險도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保險金額은 단순히 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최고한도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실무에서는 노출된 피해의 정도, 손해배상수준, 보험료의 부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보상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1사고당 및 1인당 한도액, 재물사고에 대해서는 1사고당 한도액을 설정하거나 이를 합하여 하나의 한도액으로 하는 單一限度額(combined single limit)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總補償限度額도 별도로 설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기준보상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계약자가 이를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한도액인상계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기본보상한도액은 신체배상의 경우 1인당 50만엔, 1사고당 100만엔, 재물배상의 경우는 1사고당 10만엔이며, 실제 적용된 보상한도액은 신체사고의 경우 1인당 5,000만엔~1억엔, 1사고당 1억엔~5억엔 정도이고, 재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1,000만엔~1억엔 정도이다.

마) 自己負擔金

自己負擔金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통상, 수만엔에서 수십만엔 정도로 설정되는데 고액으로 설정할 경우 큰 폭의 保險料 割引이 된다. 자기부담금도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금액은 5만엔 정도이다.

바) 保險料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完全 自由料率體制로 각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국내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경우 보험료는 대상 제품에 따라서 보험업법에 의거 대장성이 인가한 업법인가요율과 각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자유요율로 이원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식료품과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완구 등의 소비자용 제품 등이 前者에 해당하고, 자동차, 의료품, 산업용기계 등이 後者에 해당한다. 그러나 業法認可料率도 단일요율은 아니고 일정 폭이 설정되어 있어서 각 보험회사는 그 폭내에서 자유로이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요율의 형태를 띄고 있다.

보험료는 담보하는 生産物의 種類와 그 危險度, 年間賣出額, 과거의 事故經歷, 補償限度額 및 自己負擔金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제조업자의 매출액이 2억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表 Ⅲ-18> 일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적용예

업 종	가공식품제조	가정용 전동공구제조	사업용기기제조	의료품제조
매출액(연간)	20억엔	10억엔	5억엔	2억엔
보상한도액				
대인 1명	1억엔	1억엔	1억엔	1억엔
1사고·기간중	5억엔	5억엔	2억엔	3억엔
대물 1사고·기간중	1,000만엔	1억엔	5,000만엔	5,000만엔
자기부담금	10만엔	5만엔	5억엔	5억엔
보험료(연간)	1,615,550엔	995,550엔	470,500엔	44,070엔

2) 中小企業 生産物賠償責任保險

가) 概要

製造物責任法の 입법시행에 관한 국회의 부대의결시에 재정기반이 빈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 바 있어서 東京海上은 1995년 4월부터 中小企業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 보험은 중소기업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담보범위에 관한 조건의 설정 및 저렴한 보험료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국내용 보험과 같이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특약을 첨부하여 하나의 상품으로서 기능을 한다.

나) 保險約款

동 보험은 中小企業基本法에서 정한 中小企業體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체가 生産物이나 업무의 결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외에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 등에서 발생한 변호사보수 등의 재판비용과 재판외의 화해에 의한 배상책임도 대상이 되나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담보한다.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이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表 Ⅲ-19> 일본 중소기업형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 비교

A 형(Claim Made Base)	B 형(Occurrence Base) : 협의회형보험
- 보험기간중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손해를 보상 - 단일보상한도액 적용 - 500만엔이하의 손해에 대하여 90% 축소 - 담보비율을 적용 - 재판비용등의 각종비용은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	- 보험기간중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손해를 보상 - 단일보상한도액 적용 - 중소기업자 단체전체의 대상기간중의 보상한도액이 적용

保險料는 일반보험과 같이 擔保範圍에 관한 條件設定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정되고, 보험료수준은 일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50%수준이다. 이와 같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

공하는 이유는 商工 3단체가 보험가입의 촉진 및 PR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모집효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事業費가 切感되기 때문이다.

다) 契約者 및 被保險者

계약자는 기업체 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이며 기타의 경우는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피보험자는 中小企業法에서 정한 中小企業者⁵⁷⁾로 제한되며 LP가스판매, 여관업, 항공기부품제조업, 전문직업인 등은 별도의 보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補償하는 損害

中小企業者의 占有를 이탈한 생산물로 인하여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他人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중소기업자에게 청구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자가 행한 업무로 인해 업무의 종료 또는 방치후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도 담보한다. 이와 같은 損害補償金 이외에 변호사보수 등의 爭訟費用도 지급된다.

또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 등의 絶對免責事項은 대부분 동일하며, 동 보험의 담보제한사항은 一般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기본면책사항인 당해 생산물 자체 또는 담보 제조물의 회수비용, 계약에 의해 가중된 책임, 제조·판매된 제품자체를 수리·교환하는 비용, 일본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및 일본 국외의 裁判所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57)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단체	업종구분	자본금	종업원수
일본상공회의소	소매업·서비스업	1,000만엔이하	50명이하
전국상공회연합회	도매업	3,000만엔이하	100명이하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기타업종	1억엔이하	300명이하

마)補償限度額

소송비용 등을 제외하고 1청구당 또는 보험기간중 대인배상·대물배상을 합산하여 각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單一補償限度額(CSL)이 설정되고 증권외 총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중소기업자마다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약정된 총한도액을 계약전체의 보상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정송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과 정송비용을 합산하여 각 중소기업마다 1청구당 또는 보험기간중의 합산 보상한도액을 적용한다.

바) 保險料率

보험료는 개개 중소기업자마다 그 업종의 연간매출액(청약시 최근 1개년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한 생산물의 세금차감전 총액) 또는 영수금액(청약시 최근 1개년간 일본 국내에서 행한 일로써 피보험자가 영수한 세차감전 총액), 보험사고경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대표적인 업종의 보험료수준을 보면, 보상한도액을 대인대물합산 1억엔, 자기 부담금을 5만엔으로 약정한 경우의 연간보험료는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연간매출액 3억엔)는 약 135,400엔, 섬유 의류품 제조업체(연간매출액 2.5억엔)는 약 21,500엔 정도이다(제조물별 보험요율수준은 부록 2 참조).

3) PRPL보험(PREFERRED RISK PRODUCT LIABILITY)⁵⁸⁾

製造物責任法の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는 제품안전, 품질관리, 소비자대응체제 확립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타사보다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RPL보험(PREFERRED RISK PRODUCT LIABILITY : 優良生産物特約付 生産物保險)을 일본내에 진출한 AIU, Royal, BIG, AH사가 공동으로

58) 日本「保險毎日新聞(損保版)」, 1995. 10. 25, 1면

개발하여 1995년 9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PRPL보험은 기업 또는 단체가 수립한 生産物責任對策이 보험사의 기준과 비교하여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保險料를 割引(10%, 20%, 30%)해주는 것으로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追加特約 형태로 운영된다. 우량기준의 판단항목은 제품명세(팜프렛, 취급설명서, 용기포장 등), 生産物責任 리스크통제(risk control)대책, 生産物 판매체제, 기록관리, 품질관리상황, 사고경력 등인데 이들 항목을 3단계로 점수화하여 평가하여 할인율을 산출한다. 또한 동 보험에는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한도액의 50%내로 보상하는 費用限度報償特約과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에 첨부되는 單一補償限度額特約(이 경우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함)이 있다.

동 보험의 적용조건을 보면 적용대상은 연간매출액이 5억엔 이상 또는 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적용 대상물은 우량한 品質管理 또는 生産物對策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피보험자가 생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제품 및 원료, 부품이다.

4) 生産物回收費用保險(Product Recall Expense Insurance)⁵⁹⁾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유통중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事故發生 및 擴大防止를 위하여 유통된 대량의 제품을 회수·수리하여야 할 의무를 제조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⁶⁰⁾ 生産物回收費用保險은 기업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제품을 회수, 검사, 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1990년에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59) 三井海上(株), 「新種保險論」,損害保險總合研究所,1994,pp.106-112

60) 관련법규로는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유해물질 함유하는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도로운송차량법이 있으며, '87-'91동안 일본내에서 리콜 실시현황을 보면 자동차 146건(16개사), 가정용전기제품 22건(15개사), 유아용품 5건(5개사), 연소기구 4건(4개사), 레저용품·가구·주택·섬유제품 5건(5개사)등 총 182건(45개사)이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95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조사」, 1996. 4, pp.525-534.

동 보험에서 담보하는 비용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에 대한 광고 비용, 전화·팩스·우편 등의 통신비용, 회수제품의 결합유무검사비용, 회수제품의 수리 비용, 대체품의 제조원가, 회수제품 또는 대체품의 수송비용 등이다. 保險條件을 보면 보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으나 회수결정일 이후 3년(약정보상한도기간)이내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補償限度額은 1회 제품회수당 한도액과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을 설정하며 自己負擔金은 1회 제품회수당 일정금액으로 설정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의 90%(축소담보 비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는 대상제품의 종류, 연간매출액, 리콜경험, 보상한도액 등의 인수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전에는 대장성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5)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

1994년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生産物瑕疵保證保險은 생산물의 인도 후, 보증기간 내에 발견된 瑕疵로 인한 생산물자체의 손상, 고장 또는 기능적 불능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保證責任 즉, 당해 생산물의 직접 보수비용 또는 그것에 대신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前述한 생산물특별약관의 면책 사유 중에 ①의 「생산물자체의 損壞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瑕疵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인수가 기술상 어려운 보험이다. 따라서 하자 인정의 妥當性を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이 ①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정한 통일품질기준이 존재하는 것일 것, ②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정한 사업자의 등록제도, 제품형식의 승인제도, 제품의 검정제도 또는 제품의 등록제도가 존재하는 것일 것, ③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 인정하는 중립적 기관이 존재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6) 團體를 통한 保險加入制度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단체가입은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체 단체를 통한 방법 이외에 生産物賠償責任法 이전부터 시행하여 온 <表 III-20>과 같은 단체가입방법이 있다. 1965년대 후반경에 맥주나 코카콜라병의 파열사고, 등산용자일의 절단에 의한 사망사고 등 生産物責任을 묻는 사고가 증가하게 되자 종래 개별제품마다 법률에 의한 安全規制를 가하는 방식(食品衛生法, 電氣用品取扱法 등)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비자용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消費生活製品安全法을 1973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 製品安全協會가 설치되었고 소비생활용품들을 대상으로 한 “SG마크제도”가 발족하게 되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BL마크제도, SF(Safety Fireworks)마크제도, ST(Safety Toy)마크제도도 도입되었다.

<表 III-20> 마크부착부 제품의 보험 단체가입 방법

구 분		SG마크	BL마크	SF마크	ST마크
실시단체		제품안전협회	(재)Better Living	일본연화협회	일본완구협회
실시년도		1973.10	1974.7	1978.5	1971.10
마크표시 근거 및 기준		- 자주기준 - 통산대신이 인정한 기준	- 자주기준 - 우량주택부품인정기준	- 자주기준 - 완구연화안전기준 및 검사에관한 규정	- 자주기준 - 완구안전기준
대상품목		유아용품제품, 가구· 가정·주방제품,스포츠 ·레저용품등 91개품목	현관문등 32개품 주택 부품	국산 및 수입품 완구에 이용되는 모든 煙火	유아,아동용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완구
구제 조치	방 법	- 마크부착제품의 결함 에 의한 신체적장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기금으로부터 일시금	- 결함자체에 대한 보증 책임보험 - 결함에 의한 신체,재 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 결함에 의한 신체,재 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기금으로부터 위문금	- 마크부착완구로 인한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문금 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
	보 상 내 용	1명당 3,000만엔 일시금 60만엔	- 1인당 1,000-5,000만엔 - 재물1사고당 1,000만-5 억엔 - 총보상한도1-5억엔	- 신체,재물 사고당,총보 상한도 1억엔 - 위문금 신체 1인 150만엔 1사고 450만엔 재물 1사고 300만엔	- 신체 1인당 1,000만 엔 - 위문금 30만엔 - 단, 한도액을 초과하 는 경우도 있음

자료 : 長谷川洋, 「ホームオートメーションの生産物賠償責任」, 東京 : 未來工學研究所, 1995.1. p.63

마크부착제품의 경우 마크부착을 주관하는 단체가 일괄적으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加盟製造業體가 내는 檢定料⁶¹⁾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동 協會를 창구로 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다. 生産物賠償責任法이 保險制度에 미치는 影響

1) 保險會社の 引受競争

1957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1994년 10월 현재 수입보험료 규모가 약 1,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해 11월 “産業構造審議會”가 통상대신에게 보낸 “製造物責任制度 導入하다”라는 답신에서 각 손보사는 製造物責任制度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은 수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예상에 기초하여 손해보험사는 製造物責任세 미나개최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⁶²⁾

61) BL마크제도의 경우 제품의 공장출하시 가격의 0.3%임.

62) 小西一生, 전계서, pp.189

<表 Ⅲ-21> 일본의 제조물책임대책에 관한 조사결과

(단위 : %)

제조물책임대책	이용의향			이용하고싶은 경우 외부지원기관					
	이용	안함	모름	변호사등	정부,공적기관기관	업계단체	상당회사	보험회사	기타
사내연구회실시	20.7	17.0	12.4	11.7	35.3	59.2	10.7	21.5	1.6
대책위원회,안전관리부서설치	6.2	16.4	13.0	19.3	40.9	56.2	18.9	14.7	2.3
제품안전에관한사내방침,규정신설	14.5	14.8	11.8	19.6	31.8	53.6	14.5	13.1	4.5
ISO9000시리즈취득	3.8	12.4	16.8	20.7	50.4	38.8	19.4	5.8	8.6
지시,경고,취급설명서검토	14.8	13.9	12.7	12.9	26.5	66.7	4.3	17.1	2.1
리콜 실시체제구축	6.8	12.9	14.4	16.0	26.9	53.0	10.9	17.0	6.5
AS체제구축	14.6	16.0	11.6	5.4	23.4	70.7	11.3	21.8	3.2
문서관리규정구축	9.7	13.3	14.0	38.6	35.4	39.2	12.0	17.1	2.1
소송대응체제구축	22.2	10.9	12.1	39.5	27.1	40.6	9.3	35.8	1.0

製造物責任法施行에 앞서 日本損害保險協會⁶³⁾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제품사고방지 및 生産物責任 回避의 방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AS 및 유지관리가 17.6%, 사내연구회실시 14.8%, 지시·경고·취급설명서의 검토 12.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기관의 이용 의향에 대하여는 소송대응체제구축(22.2%), 사내연구회실시(20.7%)의 경우 외부기관을 이용하고 싶으며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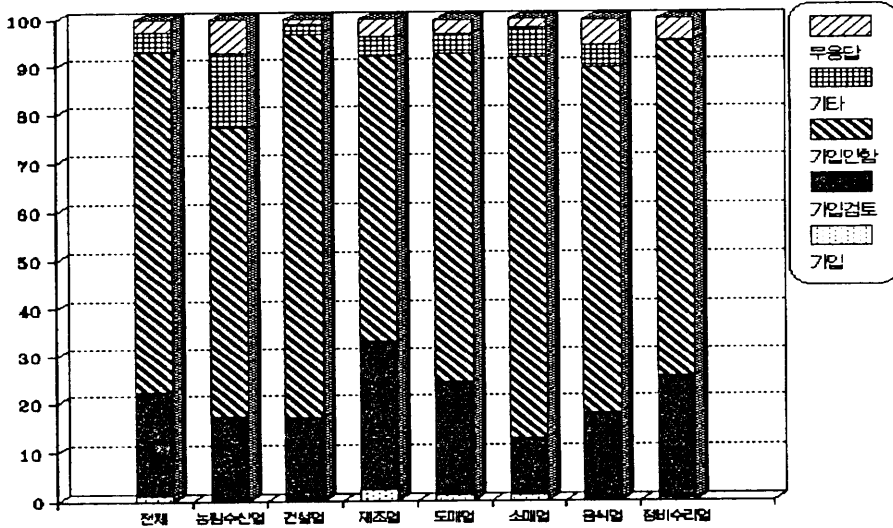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加入狀況을 보면 전체기업체중 8.5%가 가입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40.8%가 가입하고 있으며 규모가 적을수록 가입율이 낮은 것(300명 이상 999명의 기업 24.9%, 300명 미만 기업 8.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비수리업이 24.3%로 가장 높고 음식업종이 18.8%, 건설업 9.4%, 제조업 7.4%, 소매업 5.9%, 농림수산업 1.6%순이다.

63)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전체 7개업종의 20,205기업체를 대상으로 94년 10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4,809개사가 응답한 결과를 기업총수모집단으로 보정하여 발표한 것임. 일본보험매일신문, 1995. 7. 5, 2면

또한 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79.9%의 기업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8.5%, 製造物責任法施行에 따라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는 점에 대해 3.9% 응답율을 나타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응답은 건설업이 98%로 가장 높으며 소매업 95.2%, 음식업 81.0%, 정비수리업 80.6%, 도매업 65.3%, 농림수산업 59.8%, 제조업 5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발생을 계기로 보험에 들게 된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응답분포는 도매업 20.1%, 제조업 15.7%, 음식업 7.3%, 정비수리업 5.7%, 소매업 2.3%, 건설업 0.7% 순이었다. “製造物責任法 制定에 의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이 40.2%, 제조업 13.6%, 도매업 2.2%, 건설업 1.3%, 정비수리업 0.2%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保險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게 금후 보험가입예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21.1%가 가입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가입중인 비율 1.2%를 합하면 22.3%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업원 규모로 보면 1,000명 이상의 기업은 55.8%, 300명 이상 1000명미만은 46.1%, 300명 미만은 22.2%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1%로 가장 높다.

<圖 III-2> 일본의 보험가입 설문조사결과



2) 保險商品의 開發

일본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1957년 도입시 미국상품을 모델로 했지만 현재는 일본 시장의 위험에 접근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상품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生産物責任과 관련된 보험인 生産物回收費用保險,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부보율이 낮은 상태라는 인식하에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 자국내 손보사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AIU, BIG사 등의 미국계 회사등도 경쟁에 가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3) 製造業者 團體들의 共濟組合 結成

일본에서는 製造物責任法施行 以前부터 동일업체들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제품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전제도의 준비와 아울러 제품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는 2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번째는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완구의 SF마크제도, 건강치료기기의 HAPI마크제도, 가스·석유기기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 등이 있으며, 두번째는 業界團體가 基金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운용하는 공제제도로써 완구의 ST마크제도, LP가스의 제3자 피해구제사업 등이 있다.

製造物責任法 施行과 더불어 일본의 식품업계는 업계 단체인 식품산업센터를 통해 控除制度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기업을 상대로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식품업체가 중소기업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시 식품업계의 특성상 개별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보험사 6개사와 공동으로 식품산업공제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과 식품산업공제에서 나누어 지급하게 되지만 지급창구는 식품산업센터에서 주관하며, 보상한도액은 1억엔에서 3억엔까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IV. 國內 生産物賠償責任保險制度의 運營現況

1. 生産物賠償責任法理

가. 法理體系

한국에서 缺陷生産物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는 외국의 生産物 責任理論과 事例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⁶⁴⁾ 1977년 7월 한국민법학회 주최로 열린 生産物賠償責任法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외국의 生産物賠償 責任法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한국법률체계에 맞춰 수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었고⁶⁵⁾ 그 결과,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법안으로 인식되어졌다.

1988년 EC의 “生産物責任에 관한 指針”의 제정에 따라 한국의 민법학자들은 외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이론과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에서도 生産物賠償責任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生産物責任에 대한 법리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에 기초를 둔 불법행위책임과 보증책임을 포함한 계약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1) 契約責任(the contractual liability)

缺陷生産物被害에 대한 契約責任은 민법의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제390조)”, “賣渡 人の 擔保責任(제580조, 제581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당사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책임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통상 缺陷生産物에 의해 확대된 손해는 민법의 특별규정에 의해 보상된다(제393조 2

64) 연기영, 전게서, pp.260.

65) 한봉희,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7호(1978).

항). 채무이행관계가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채권관계 확인소송이나 이행소송을 통하여 해결된다. 이것은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당사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현재의 생산-공급-판매 체계하에서는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품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판매후에 제품의 질에 대한 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반대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고 그의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

민법상 保證責任은 계약의 解止와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제580조, 581조 1항), 種類賣買의 擔保責任(제581조 2항)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에 의거 缺陷生産物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책임규정은 소비자가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100% 보상받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보증책임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채무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기초한 보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缺陷生産物에 의한 배상금은 채무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벗어나므로 보증책임이론은 生産物책임소송에서의 피해자나 제3자를 다룰 때에는 부적합하다. 물론 상품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담보가 있다 할지라도 제조업자와 소비자간에 계약당사자 관계가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제조업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책임은 소비자나 제3자에 대한 傷害에서 비롯된 확장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증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증책임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이나 계약당사자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민법(제580조, 581조 1,2항)의 품질보증규정은 보증책임을 다루는 데 부적합하다.

3) 不法行爲責任(tort liability)

가)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

우리나라에서 生産物責任訴訟에 대한 法學者와 司法府의 의견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한 과실책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법 750조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表 IV-1>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주요내용의 비교

구 분	生産物賠償 責任法	民 法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대 상 물	제조물(동산)	동산·부동산·행위 등		
책임기준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계약관계의 존재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손해배상등의 범위	확대손해포함	확대손해포함	확대손해불포함	확대손해포함

그러나 소비자는 生産物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한 제조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평등하지도 가변적이지도 않다. 즉, 제조업자는 제조와 품질검사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고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이론에 의해 生産物 책임을 다루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 이러한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해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업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立證責任의 轉換理論(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theory)은 현행 민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生産物賠償責任法에 규정될 경우 缺陷生産物에 대한 嚴格責任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조업자에게 공평하도록 제조업자에게도 그의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론에 추가하여 결함과 결함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인과관계를 살피는 立證責任의 輕減理論(mitigation of burden of proof)도 고려할 만하다.

나)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으로써는 缺陷生産物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므로 엄격책임이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격책임을 근간으로 한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工作物所有者의 責任(민법 제758조)규정이 動産을 포함한 모든 生産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758조에 의하면 不動産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生産物이 動産이라는 점과 758조가 一般規定이 아니라 特別規定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한편,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엄격책임에 가까운 法院의 判決⁶⁶⁾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품의 결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결함요인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기 때문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조자측의 증명이 없는 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현행 과실책임하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生産物賠償責任法の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판단된다.

66) 동부화재측은 지난 93년 4월 현대자동차를 구입한 보험계약자 이모씨가 운전하고 가던 차체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하자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 6. 24.

나. 우리나라의 被害事例

우리나라에 있어서 결함제품에 의한 피해사례로는 텔레비전 브라운관 폭발사건(1978.12), 라면우지 파동, 미백화장품사건(1992.9), 자외선살균등사건(1992.9), 콘택트렌즈 유해세정액사건(1992.10), 변압변류기사건(1992.11), 미국산 건강식품사건(1993.8), 징코민F의 메틸알콜 사용사건, 녹즙기 손가락절단사건(1994.2), 뇌염백신사건(1995.11), 보일러설계결함 일가족 4명 질식사망(1995.11), 가스누설경보기 일부결함(1995.11), 분말과자 어린이폐기능장애 사망사건(1996.1) 등을 들 수 있다. 生産物責任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이처럼 식품, 화장품, 음료수, 의약품, 기계류 등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무체동산, 모피와 같은 자연생산물과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품·서비스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총액을 실태조사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신체·재산피해를 합쳐 2조 4천억원 이상이며, 이 중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은 1,550억원에 이른다.⁶⁷⁾

<表 IV-2>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액의 추정('91~'92년평균)
(단위: 억원)

항 목	총피해액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액
o 신체피해		
교통사고	16,431	115
가정내·주변사고	1,202	1,063
수입상품 피해	58	56
o 재산피해		
화재	527	273
차량 및 기타물적손	6,524	47
합 계	24,742	1,554

67) 송태희,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입법세미나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6. 27, pp.12.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분포를 보면 신체사고의 경우 가정내 또는 주변사고가 1,0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가 273억원으로 많다. 그러나 최근 대형 사고의 빈발로 신체사고의 경우 배상액이 급騰⁶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발생분포를 상품별로 살펴보면 식품 28.8%, 의약품 19.2%, 가전제품 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상당히 많은 위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제기는 제외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법원의 판례⁶⁹⁾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관련 문제를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국민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행 민법하에서 소비자 또는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의 立證責任負擔도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 立法論議 및 立法案의 主要內容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12월에 최초의 生産物賠償責任法(案)이 제110회 臨時國會에 上程된 前例가 있다. 김순규의 25명의 의원이 發議한 동 법안은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過失相計의 特則, 손해배상조치 및 보장사업 등 총 14개

68) 서해훼리호침몰사고(1993년, 사망 292명) 9,900만원,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1993년, 사망 66명) 1억7천만원, 구포역 열차사고(1993년, 사망78명) 1억2천만원, 성수대교붕괴사고(1994년, 사망32명) 1억5천만원, 서울아현동가스폭발사고(1994년, 사망12명) 2억1천만원,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1995년, 사망99명) 2억6천만원, 삼풍백화점붕괴사고(1995년, 사망502명) 3억8천만원
69) 콜라병폭발사건(대판 1975.7.22, 75다844), 경상사료사건(대판 1977.1.25, 75다2092),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사건(대판 1979.3.27, 78다2221), 주사기결함사건(대판 1979.12.26, 79다1772), 냉장고 병꽃이사건(대전지법 1987.9.17, 85가합828), 변압변류기폭발사건(대판 1992.11.24, 92다18139), 강창경, “제조물책임제도와 리콜제도”,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책임심포지엄, 1996. 6. 20, pp.59.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1990년 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심각성과 관련법규의 정비, 세계 여러나라의 생산물관련법의 제정동향에 따라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며 1994년 6월에는 “생산물배상책임법의 입법방향”⁷⁰⁾에 대한 세미나를 주관하여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소비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생산물배상책임법이 1997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1996년 4월부터는 일차적으로 消費者保護法 施行令을 개정하여 전 공산품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生産物賠償責任法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주요국가의 법규를 비교해 보면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責任法理, 缺陷判斷基準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사한 면이 많다.

<表 IV-3> 우리나라 입법안 내용과 주요국과의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입법안(1994.6)	미 국(판례)	EC 지침(85년 7월)	日本 生産物賠償責任(94년 7월)
책임범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엄격책임
결함의 판단기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단, 제조물의 특성, 사용형태, 인도된 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	소비자기대기준, 위험효용기준, 표준일탈기준	마땅히 기대하여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소비자기대기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단, 제조물의 특성, 사용형태, 인도된 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
결함의 추정규정		인정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과관계의 추정		인정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의 항변이 인정	원칙적으로 인정(인정하지 않는 Option이 있음)	인정
제조물 범위	부동산	포함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포함되지 않음
	미가공·차용산물	포함되지 않음	포함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포함하는 Option이 있음)	포함되지 않음
판매자의 책임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부담함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함	부담하지 않음
대인배상책임의 설정		설정하지 않음	설정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음(설정하는 Option도 있음)	설정하지 않음
징벌적손해배상금		인정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인정함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과실상계: 중과실에 한정		한정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한정하지 않음	한정하지 않음	한정하지 않음
법적책임기간		설정함(10년 단, 축적손해는 손해발생시부터 기산)	22개월이 설정하고 있음(대부분 10년)	설정함(10년)	설정함(10년 단, 축적손해는 손해발생시부터 기산)

70) 강창경, 전계자료, pp.12-21.

1) 生産物の 範圍

生産物責任의 발전배경에 따르면, 生産物책임이 적용되는 生産物の 범위에는 대량 생산·대량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포함되었었는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영리목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모든 動産을 生産物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용대상 生産物の 범위는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으로 하며 제조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수렵물 등은 生産物の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 중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生産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缺陷의 正義

缺陷이란 소비자가 그 生産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을 결여한 것으로 이는 絶對的인 安全性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合理的인 범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인가에 대한 판단은 社會的 價値基準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相對的 概念으로서 이 경우 제품의 표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 제품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責任主體의 範圍

1次的으로 生産物責任을 지는 자는 결함상품의 製造者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품 생산 및 유통단계가 다단계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함상품의 제조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면 제대로 소비자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責任負擔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生産物責任負擔者의 범위는 ①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生産物の 성명·상표·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

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②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生産物을 수입한 자, ③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供給者로 정한다.

4) 製造者의 免責事由

제조자는 다음의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生産物責任을 면하도록 한다. ①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②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③ 그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④ 그 제품의 결함이 정부에서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⑤ 개발위험의 항변 ⑥ 부품·원재료 제조자의 항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결함의 원인을 제조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5) 損害賠償請求權의 時效 및 除斥期間

短期消滅時效는 피해자가 손해발생, 결함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長期消滅時效는 제조자가 손해를 야기한 生産物을 유통시킨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⁷¹⁾ 이는 일본이나 EC지침과 같다.

2. 保險制度의 運營現況

가.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우리나라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지난 1967년에 최초로

71) 民法 제766조(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피해자나 그법정대리인이 그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에도 전항과 같다.

도입·판매되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운영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다른 특별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율체계가 協定料率로서 매우 비현실적이었고 국내수요는 거의 없이 무역조건상 담보가 요구되는 美 洲地域中心의 수출제품에 대해 재보사 求得料率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강화 및 제조업자의 제품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광고·선전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동 보험의 가입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Y'94에 체결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총 1,147건에 보험료 약94억원으로 전년도 1,078건, 47억원에 비하여 건수는 6.4%, 보험료는 100.0%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제조업체에 대한 가입비율은 약 0.7%에 불과하여 입법화시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주요국가는 전체 손보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점유하는 비율이 6~7%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0.8%로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表 IV-4>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실적

(단위 : 억원, %)

년도	전체손해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보험료	증가율	점유비
1990	35,895	36.0	100	303	44.3	0.8	25	-	0.07
1991	47,300	31.8	100	370	22.1	0.8	35	14.0	0.07
1992	57,806	22.2	100	435	17.6	0.8	37	5.7	0.06
1993	67,803	17.3	100	520	19.5	0.8	47	27.0	0.07
1994	83,132	22.6	100	629	20.9	0.8	94	100.0	0.11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호.

生産物賠償責任保險실적은 대한재보험 특종부 제공

또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약관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상품도입초기 국내에서는 生

産物責任에 거의 무관심하였으나 미국, 유럽 등으로의 해외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컸기 때문에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각국의 生産物責任法立法化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법적의식이 깨어나면서 내수용 生産物에 대한 보험가입이 급성장하고 있어 生産物賠償責任保險市場의 55%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表 IV-5>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별 보험료 실적
(단위 : 건, %, 천원)

년도	국문약관			영문약관			합 계		
	건수	보험료	손해율	건수	보험료	손해율	건수	보험료	손해율
1990	461	961,357	72.6	148	1,582,475	27.5	609	2,543,833	44.5
1991	620	1,539,302	52.2	160	1,994,924	28.7	780	3,534,226	38.9
1992	707	1,690,282	55.3	144	2,010,081	7.2	851	3,700,871	29.2
1993	922	2,084,779	106.2	156	4,724,763	29.5	1,078	4,748,861	63.2
1994	988	4,624,152	71.1	159	4,724,763	31.4	1,147	9,351,915	51.0

주 : 1. 동 실적은 대한재보험(주) 수재계약에 대한 원수보험료임(외국 특약제외)

2. 생산물배상책임 위험만을 별도로 담보한 계약기준임

자료 : 대한재보험 특종부 제공

가) 保險約款

우리나라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험약관은 크게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누어 지며 국문약관은 국내판매제품에 대해 손해사고기준증권을 적용하고 영문약관은 해외수출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문약관은 1967년 일본의 사업방법서를 모델로 도입한 것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生産物特別約款과 追加特約(판매인 추가특별약관 및 명의사용인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주로 손해사고기준 담보증권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약관은 1982년 11월에 도입되었는데 이 약관은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에

특약형태인 products liability clause(I: 손해사고기준증권, II: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와 관련추가특약을 첨부하여 운영되어 왔다. 현행 약관은 이들 약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영문약관은 1987년 5월, 국문약관은 1988년 7월에 개정되었다. 동 개정약관은 1986년에 개정된 미국의 ISO표준약관을 모델로 하여 보완이 되었는데 주요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국문약관의 약관체계는 기존과 같은 보통약관에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인추가특약과 명의사용인추가특약을 신설하였고, 담보기준에서는 기존 손해사고기준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기준약관을 신설하였으며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내용상의 차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치시켰다. 또한 영문약관은 1986년 ISO약관과 같은 형태로 보완한 것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즉, 기존의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에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coverage를 첨부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을 포괄담보 (All Risk Coverge)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생산물배상책임만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약관(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을 신설하였으며 담보기준에 있어서도 손해사고기준과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을 도입하였다.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의 기본적인 보험내용은 손해사고기준증권과 동일하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遡及日字(retroactive date)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claim made date)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는 사고와 배상청구를 보험기간중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更新契約 체결시 등에 있어서 무담보기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通知期間의 연장담보조항을 두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보험료 불지급외의 다른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자동 연장담보되며, 갱신된 배상청구기준증권의 소급담보일자가 이 증권에의 소급담보일자보다 후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담보기간연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갱신된 증권이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연장담보⁷²⁾되거나 추가연장담보⁷³⁾되기도 한다.

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때문에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 끼쳐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法律上 損害賠償金(영업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1항), 손해의 防止・輕減費用(영업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2항),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損害防止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保險會社 協力費用, 被保險者가 지급한 訴訟費用, 辯護士 費用, 仲裁, 和解 또는 調整에 관한 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供託保證保險料를 보상한다.

다) 補償限度額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1사고당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自己負擔金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72) 통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의 사이에 회사가 통지받은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지일부터 5년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73) 통지기간을 추가연장 담보한 경우, 연장통지기간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개시하여 무기한이 된다.

-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기간의 추가연장담보를 요청하고 추가보험료를 청구일자에 지급한 경우에만 통지기간은 추가연장담보되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기전의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에게 이 증권으로 보상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기초보험증권, 초과손해보상증권 기타 여하한 형태의 증권이든지 통지기간의 추가연장담보 배서가 유효한 날 이후를 보험기간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이 증권은 이 보험증권의 「다른보험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다른 증권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만 보상한다.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라) 保險料率

1988년 보험약관 개정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국문보통약관의 25개 특약 중 9개 특약 요율은 協定料率化⁷⁴⁾하고 生産物賠償責任保險등 나머지 특약요율은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完全自由料率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사용하므로서 독자적인 요율체계는 갖추지 못하였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요율은 행정의 감독이 개입되지 않은 자유요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는 제품의 종류와 내용, 피보험자의 업무형태와 매출액규모,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상제품의 시장체류량, 과거의 사고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독자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나. 其他關聯保險

1) 生産物リコール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우리나라에서는 消費者保護法 등⁷⁵⁾에 의거 식품,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74) 1988년 7월 5일 약관개정인가시 협정요율에서 배제된 특수위험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음. (황철홍, “제조물책임법의 입안과 그 대응방안 연구”, 「보험개발연구 1990. 제2호」, 보험개발원, 1990, p.127

- 보험료산출기초가 가변적이거나 임의성이 있는 종목(매출액, 임금, 수출금액, 입장자등) : 생산물배상책임 등
- 과거실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고빈도가 빈번하여 요율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종목 : 선박수리업자, 항만하역업자등
- 위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요율의 협정화가 곤란하거나 요율산정상 다기화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종목 :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계약상가중책임, 오염사고담보, 인격침해담보 등

75) 우리나라의 리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로서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30조4,5,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약사법 시행규칙16조 등이 있다. 주요국의 각종관련법규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 1995.2.참조.

'91-'95간 국내자동차의 리콜현황을 보면 총판매대수(842만대)의 22.5%인 190여만대(해외리콜

리콜(위해물품에 대한 결함시정)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1996년 4월 1일부터 모든 공산품과 아파트 그리고 서비스 등에까지 확대하여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의 위해물품자진시정). 또한 이를 위해 경찰서, 보건소 등 행정관서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도 소비자 피해고발을 접수 할 수 있는 위해정보기관을 운영⁷⁶⁾하는 한편 재정경제원 장관이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시 소비자 피해기구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기능은 강화되고 生産物責任을 부담하여야 하는 제조업체 등은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험의 사회 공익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1995년에 2개 손보사가 재보험자 구득요율을 사용하는 生産物回收費用保險(Product Incident Coverage)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가입건수는 1건(연간 보험료 약 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B증권사가 동 보험시장을 전망한 바에 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가 약 6,000억원⁷⁷⁾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조만간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입법화될 경우 동 보험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Policy)

동 보험은 1987년 약관개정 이전에 영업배상책임보통약관의 특약으로 인가됐으나 계약실적이 없는 관계로 개정시 폐기되었다가 1989년 삼성사가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에서는 生産物의 결함사고로 인한

비율 63.9%, 국내리콜비율 2.9%)가 리콜되었으며 이중 해외수출차량이 91.4%(174만대), 국내용 8.6%(16만대)로 조사되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95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조사」, 1996. 4., pp.543-546.

76)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위해정보보고기관은 ①경찰서, 소방서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②법 19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③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 ④의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⑤기타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기관임.

77) 「한국경제신문」, 1996. 1. 31.

生産物の 자체손해만을 보상한다. 동 보험의 수요는 生産物回收費用保險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행되면 동 보험의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 主要國과 比較 및 示唆點

1) 主要國과 比較

賠償責任保險은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세계 주요국가로 전파된 보험종목으로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몇몇 특수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많다. 본고에서는 보험약관조항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측면에서의 차이점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保險約款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험약관은 미국, 우리나라,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통일된 약관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할 때에는 각 보험사가 통일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위험의 담보방식에서 보면, 통상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특약을 첨부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별도의 독립된 상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본, 우리나라, 영국, 독일 등 국가에서는 독립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존재하지 않고, 기업의 배상책임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내에서 다른 배상책임위험(예를 들면 시설의 결함에 의한 배상위험)과 특별한 구별 없이 생산물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이 기업의 다양한 배상책임위험 중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으로 claims-made policy를 도입·사용하는 것에 많은 찬반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보상분쟁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험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특히 벨기에의 경우 1993년 보험법 개정시 claims-made policy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독일, 스위스 보험시장에서는 동 기준이 처음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반면,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원 등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논쟁없이 사용되고 있다.⁷⁸⁾ 또한 영국, 일본,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물에 대하여는 손해사고기준증권을 사용하고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사고기준증권을 의약품, 화학품과 같은 일부 高危險製品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表 IV-6> 각 국 의 생 산 물 배 상 책 임 보 험 내 용 비 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영국
보험약관	-국내생산물 :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생산물특약첨부 -해외수출품 : Products/completed Liability Policy(II) -1986년 미국ISO 표준약관	해외PL보험과 국내PL 보험으로 구분되고 1973년 미국ISO의 표준약관 사용	-1986년도CGL에서 생산물 배상책임을 담보 -Products/completed Liability Policy(I,II)	통일적인 약관의 형태는 없으며 각 보험회사마다 약관을 작성·사용하고 있음
담보 기준 b)	OBP CMP			
	국내생산물 해외수출생산물	국내생산물 해외수출생산물	위험성이 낮은 생산물 의약품, 화학품등 고위험성 제품	국내생산물 미국, 캐나다수출제품
보상하는 손 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보증금액,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협력비용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보증금액,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협력비용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보상으로는 소송비용, 협력비용, 보증금액등이며 이는 보상한도액 외에서 보상함	손해배상금, Claim해결을 위한 정송비용
보상한도액	-대인, 대물 각각에 대하여 1사고당 및 보험기간중의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기간중 총보상한도액	-대인, 대물 각각에 대하여 1사고당 및 보험기간중의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기간중 총보상한도액	-대인, 대물각각에 대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기간중 총보상한도액	1사고, 보험기간 각각에 대한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요율	모든계약에 대해 재보험자 구득요율 적용	-해외PL보험 : 완전자유요율 -국내PL보험 : 보험업법에 의거 대장성이 인가한 업법인가요율 사용	자유요율 ISO가 Prospective Loss Cost 산출,제공	자유요율

주 : 1) OBP: occurrence basis policy, CMP: claim-made basis policy

78) Business Insurance, 1992. 12. 14.

나) 對象이 되는 製品

工業製品의 경우에는 완성품, 부품, 원재료, 소재 등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되고, 農水産物의 경우에도 가공품, 미가공품 모두 대상이 된다. 이들 제품의 용기, 포장, 취급설명서, 팜플렛 등도 아울러 대상이 된다. 단, 설계도,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 단순한 기술공여 등은 원칙적으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향후 포함여부가 주목된다.

다) 被保險者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을 불문하고 모든 製造業者 및 그 유통에 관련된 도매, 소매 등의 모든 販賣業者가 제품결함에 의한 타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모두가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작기계 등의 조립, 설치만을 하청받은 하청업자 등도 그 업무의 결과에 기인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본 보험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1社일 필요는 없으며, 복수의 기업을 群으로 하여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Producers' Liability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함제품의 제조자 책임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제조업자만을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다.

라) 補償하는 損害

제품의 결함(일반적으로 ① 설계상의 결함, ② 제조상의 결함, ③ 경고의 태만 등과 같은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法律的賠償金(이자가 가산된 경우는 그것을 포함)이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이다. 신체장해의 경우의 慰謝料(위로·사과금), 재물손해의 경우의 사용불능손해는 통상 보상된다. 또한, 이들 배상금 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소송, 중재, 화해, 조정 등의 비용(변호사비용

을 포함)도 보상된다. 보험금의 지급은 반드시 소송에 의해 결정된 것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의 조정, 화해 등에 의해 결정된 경우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범위내에 있는 한 담보대상이 된다.

免責事由는 다른보험과 마찬가지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고의(intention), War Risk, Nuclear Risk, 천재지변(act of god), 오염위험(pollution risk) 등과 같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존재하며, 특히 중요한 면책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로 어느 국가나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① 製造 또는 販賣한 製品 그 自體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

법률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품공급자는 당해 제품의 교환·보수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이 되므로 별도의 보험에 의해 담보되며 당해 제품의 사용불능에 의한 손실 등 경제적 손해도 면책으로 하고 있다.

② 製品의 回收에 필요한 費用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품공급자는 ① 제품의 보수·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소위 클레임 사고), ② 당해 결함에 의한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따른 배상을 하고(생산물배상책임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③ 회수(recall)를 하게 되는데, 이 3가지의 손해 중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②의 생산물배상책임사고만이며, 회수비용 등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미나 일본에서는 하자보증보험, 회수비용보험이 존재하지만 그 인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도 상품은 도입되어 있지만 계약실적은 수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③ 契約에 의해 인수한 賠償責任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등 제품공급자간에는 매매계약서상 Hold Harmless Agreement(책임인수계약)이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물배상책

임보험에서는 본래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키로 한 계약 책임(contractual liability)에 대해서 위험측정상의 어려움, 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衡平性 측면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담보공백은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약 형태로 담보된다.

마) 補償限度額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각각에 대해 설정하는 방법과 이 두가지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일본,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독일, 벨기에 등 몇몇 국가에서는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 保險料率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의 대상제품 연간매출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된다. 이 보험요율은 제품의 종류와 내용, 피보험자의 업무형태와 매상규모,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액, 대상제품의 시장체류량, 과거의 사고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다. 보험요율에 대한 규제는 각국 모두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自由料率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에 의거, 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 일부국가에서는 보험협회 등의 사업자단체가 산출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과 같이 ISO가 제시하는 순보험료(loss prospective loss cost)를 자사의 실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主要國의 示唆點

生産物賠償責任法の 입법이 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EC지침에 따라서 生産物責任制度를 도입한 유럽국가 중 영국을 비롯하여 법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보험제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발달한 상태였고 소비자들의 보험에 관한 인식도 높았었기 때문에 입법시행후 보험제도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IV-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소송관련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책임 기준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1963년 채택)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1985년 EC지침 채택)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1995년 7월)
소송 비용 ¹⁾	소액에 따라 결정됨	소액에 관계없이 일정 비용이며 주별로 다르나 평균 60달러 정도로 낮은 수준임(최고는 100달러 정도임)	-프랑스,스페인 무료 -이탈리아,네덜란드,영국은 소액과 무관한 일정액 -독일은 소액에 따라 결정됨(30만마르크의 경우 2,178마르크임)	소액에 따라 결정됨(1000만엔의 경우 57,600엔, 3000만엔의 경우 137,600엔임)
변호사 수	3,048명(1995.5월) 1인당국민수 14,584명	70만(1990년) 1인당국민수 356명	변호사 1인당국민수 영국 61,000명 819명 독일 60,000명 1,283명 프랑스 28,290명 1,944명 이태리 52,000명 1,152명 * 각국 1991년 기준임	14,433명(1991년) 1인당국민수 8,569명
변호사 보수 제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정됨.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의 증가에 따라 채감적용됨(예시하면 1백원: 10%, 700만원:1.9643%임)	원고측 : 성공보수제도 피고측 : Time Charge제도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나 패소하면 지불하지 않음	성공보수제도는 영국에서 일정한도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금지되었음	각지방의 변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연합회가 정한 보수동기준규정에 따름.(일반적으로 원고는승패소에 관계없이 목적을 달성한때는 보수금을 받고 있음)
배심 제도	없음	헌법에서 배심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증되어 배심원제도가 널리 채택됨	없음, 구각에 따라 다르나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채택한 국가도 있음	없음
징벌적 배상	없음	있음	없음(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보상을 초과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음)	없음

주 : 1) 소송비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행위에 요하는 비용(재판비용 : 심판의 수수료, 송달, 공고 및 증거조사비용)과 당사자비용(소송서류작성비, 당사자의 여비, 일상 및 숙박료)임.

자료 : 長谷川洋, 「ホームオートメーションの生産物賠償責任」, 東京:未來工學研究所, 1994, pp.217

한편, 미국에서는 生産物責任訴訟이 급격하게 많아졌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보험료의 급등이나 보험인수 거부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실제의 손해액과 별개로 부과하는 懲罰賠償制度, 陪審員制度, 변호사의 成功報酬制度, 訴額에 관계없는 提訴費用 등 미국 특유의 司法制度에 기인한 점이 크며 산재보상급부제도나 의료보험제도의 不備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보험위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증장기적인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배상책임법리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일치된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대기업체는 대부분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부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보유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특히 내수용의 生産物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더욱 보험부보의 필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生産物賠償責任法 시행에 따라 보험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손보업계의 활발한 신상품개발, 업종별 단체들의 공제구성, 기업체의 생산물책임 대응책 마련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生産物賠償責任法 시행과 함께 입법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체의 비용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中小企業體用 生産物賠償責任保險”, 生産物責任對策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 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PRPL보험(PREFERRED Risk Product Liability), 생산물보증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을 판매자의 위험까지 확장하는 보험(Extended product guarantee liability) 등 생산물책임 관련상품의 개발로 활발한 인수경쟁과 서비스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행될 경우 기업체들의 대응체제구축 노력과 더불어 보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손보사간 경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선진 외국에 비하면 중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유교문화적 영향을 받아 법적사상이 그리 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고도의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아직까지는 미개척 분야이며, 향후 生産物賠償責任法 立法 등으로 국민들의 소송 제기건수가 증가하고, 또한 이 현상이 의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인직업배상책임 리스크로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분야가 손보시장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부상될 시기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대형 손보사의 배상책임보험종목의 보험료구성비를 보면, FY'95 배상책임보험의 전체수입보험료(102억)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25억원으로 25.3%를 점유하고 있는데 39%를 차지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다음의 주영업종목임을 상기할 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保險制度의 活性化 方向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자가 부담해야할 책임이 증대되고 엄격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처방법으로는 自家保險을 영위하거나 기금 또는 조합형태의 상호부보나 保險으로 危險을 轉嫁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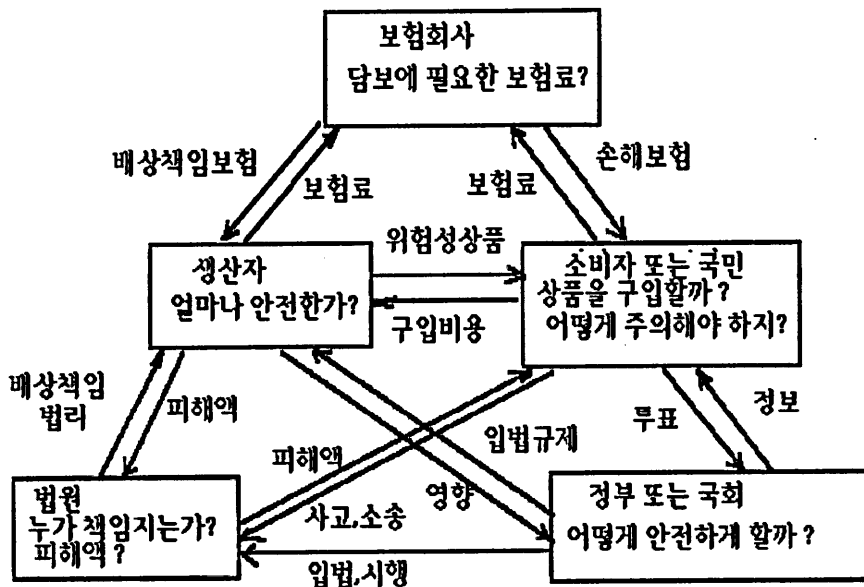
生産物賠償責任法의 제정 논의와 더불어 보험업계 나름대로 심도있는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동 법의 제정에 따른 被害保障의 確保方案으로 제시될 여러 경제시설 중 가장 유력한 제도인 保險制度를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제도를 時宜適切하게 再構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製造物의 種類에 따른 科學的인 危險分類 및 料率算定 프로그램의 개발, 外國約款의 追從에서 벗어나 國內實情에 맞는 保險約款을 再構成하는 것 등이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손해보험의 잠재시장의 하나인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 保險需要의 增加에 따른 保險商品의 整備

1) 保險需要의 推定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需要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전개된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해 엄격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자동차의 구입을 결정하고 그 대금을 생산자에게 지불한 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생산물배상책임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엄격책임법리에 근거하여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정부나 국회 등에 입법규제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조업체에 대한 엄격책임법리가 도입되는 경우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圖 IV-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수요전개



자료 : Colin Camerer, Howard Kunreuther, "Making decisions about Liability and Insurance:Editors' Comment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7, No.1, 1993. 8.

입법화에 따른 수요 증가의 간접적인 예로 일본과 무역관계가 많은 국내 전자업체의 일본의 製造物責任法 施行에 따른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내 전자업체는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거나 기존보험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확대하는 등의 보험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전자는 일본 현지판매법인을 통해 일본손해보험사에 최근 자가브랜드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건당 보상한도액 1억엔인 보험과 보상한도액 2백만달러인 초과보험을 국내 A화재에 가입했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1, 2차 보험 모두 국내A화재에 가입했다. B전자는 동경본사를 통해 지난 92년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연간 보상한도액 15억엔인 보험에 가입했으나 生産物賠償責任法 시행으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 B손해보험사의 동경지사측과 보상한도액의 증액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C전자도 현재 수출상품에 대해 연간 총보상한도액 2백만달러인 보험을 국내 C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본이 주거래선 위주로 물량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⁷⁹⁾

이와 같은 현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나라에서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입법화되는 경우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수요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보험료의 추정을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미국 RIMS의 손해보험관련 리스크비용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체들은 연간매출액의 0.14%⁸⁰⁾를 배상책임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보험소비자기구(National Insurance Consumer's Association)의 生産物責任에 관한 조사결과⁸¹⁾도 RIMS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에 이를 적용하여 보면 배상책임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약 3,600억원(1993년 광업 및 제조업매출액 2,562,292억원 $\times$ 0.14%)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市場占有率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는 현재 94억원으로 전체손보의 0.1%, 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0.8%이기 때문에 선진외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산물책임보험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생산물책임보험의 시장점유율이 미국과 동일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전체 손보에 대한 점유비가 유럽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평균적인 비율 6.0%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입보험료는 약 4,900억원⁸²⁾으로

79) 『한국경제신문』, 1995.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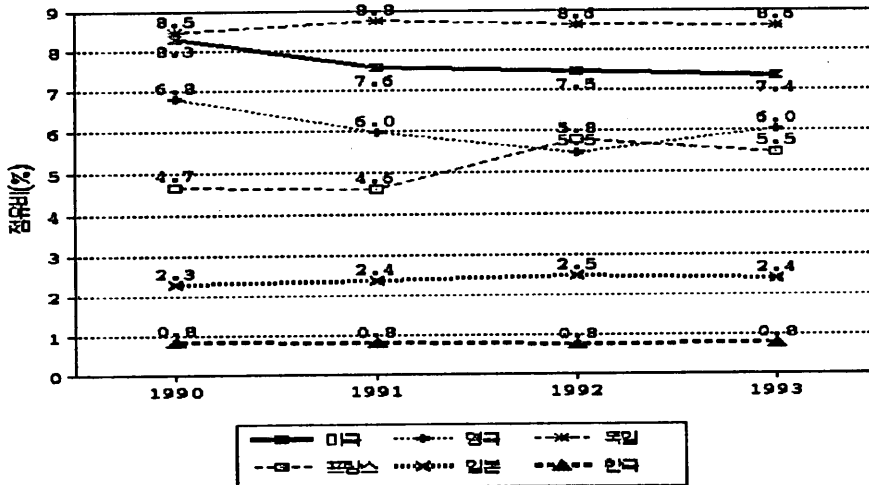
80)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Inc., *Cost of Risk Survey 1995*, Tillingast, 1995, pp.46

81) 미국보험소비자기구는 1991년부터 제조물책임에 관한 실적에 대해 “보험경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미국보험국장회의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991년 제품의 소매매출액 총액이 1조 2827억3900만달러이며 지불한 보험료는 25억 985만9000달러이었음. 소서일생, 전계서, pp.192

82) 전체손해보험 보험료 83,132억원 $\times$ 미국생산물보험 점유비 0.8% $\times$ (프랑스의 배상책임보험 점유비 5.5% / 국내 배상책임보험 점유비 0.8%)

추정된다.

<圖 IV-2> 주요국가의 배상책임보험 점유비 현황



세번째 방법은 제조업종별 근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적용요율이 미국보험회사 요율인 관계로 수출품과 내수품으로 나누어 수출품은 요율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내수품은 50%정도 인하 적용하면 부보율은 수출품 50%, 내수품 40%로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보험료는 약 4,80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국내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규모는 3,600억원에서 4,8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1994년도 말 현재 가입율이 0.7%에 불과하고 연간보험료도 94억원이기 때문에 추정결과와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따라서 生産物賠償責任法이 立法施行되는 경우 보험 가입율의 증가와 더불어 보험료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IV-8> 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추정

제조업 현황 ¹⁾		연간매출액 (억원)	추정보험료(억원) ²⁾		
업종구분	업체수		BI	PD	계
광업	1,642	18,272	2	2	4
음식료품	5,792	207,633	207	7	214
담배	16	32,738	10	1	11
섬유제품	9,617	171,226	50	49	100
의복	8,141	76,967	20	1	21
가죽, 신발	3,130	55,789	32	8	40
목재, 나무	2,556	26,867	28	1	29
펄프, 종이	2,496	60,546	3	4	7
인쇄, 기록매체업	4,192	49,141	14	5	19
석유정제, 핵연료	77	128,368	179	185	364
화학제품	2,553	233,701	623	112	735
고무, 플라스틱	5,251	96,468	113	28	141
비금속광물	4,708	119,227	16	11	27
제1차금속	1,988	212,613	395	614	1,009
조립금속	8,229	107,767	174	7	181
기타기계, 장치	11,246	199,012	322	12	334
사무, 계산용기계	530	30,717	23	15	38
기타전기기계	3,780	84,989	276	41	317
영상음향, 통신	3,393	255,970	34	25	58
의료정밀광학	1,668	25,700	169	2	170
자동차	2,655	234,445	381	226	607
기타운송	767	75,287	245	72	317
가구등제조	57,947	57,663	61	3	64
재생재료처리	132	1,186	0	0	0
합계	142,506	2,562,291	3,376	1,431	4,806

주 : 1) 제조업체 현황 및 연간 매출액은 1993년 12월 말 기준임.

2) 보험요율은 보상한도액이 대인 백만달러, 대물배상 오십만달러일때의 요율임

자료 : 1) The Cologne Re., *Product Liability for Exports to the USA and its Insurance*,

2)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제 42호(Korea Statistical Yearbook)」, 1995, pp.154-155

2) 保險商品の整備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保險約款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6년도에

개정된 미국약관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表 IV-9>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특징

	국문약관	영문약관	비고
보통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I, II)	I :손해사고 기준 II:손해배상 청구기준
특별약관	-생산물특별약관(I, II) -판매인추가특별약관 -명의사용인 추가특별약관 -보험료정산특별약관	-Additional Insured(Concessionaires)Clause -Additional Insured(Vendors) Clause -Premium Adjustment Clause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보험요율	재보험자 구득요율	재보험자구득요율	
적용대상	국내 생산물	해외수출 생산물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은 담보범위나 보험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의 경우는 다르다.

첫째, 製品의 擔保方式인데 국문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특정 제품만을 담보하지만 영문약관은 배서에 담보제한되지 않은 모든 피보험자의 제품을 담보한다.

둘째, 自己負擔金 適用方式이다.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보험금지급시 발생한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반드시 적용하고 있는 Loss Sharing방법이다. 국문약관의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인 데 비하여 영문약관은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 지급하되 지급보험금의 최고한도는 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액 5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인 보험계약의 경우 5억 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문약관의 지급보험금은 4억 9천만원(5억 2천만원-3천만원)인 반면, 영문약관은 4억 7천만원(5억원-3천만원)이 된다.

셋째, 重複保險시 支給保險金 계산방식의 차이이다. 국문약관은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contributory by each claim)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문약관은 균등액분담방식(contributory by equal share)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병행하여 보상한도액비례분담방식(contribution by limits)을 예외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영문약관의 경우 前者는 각 보험계약의 분담조건이 균등액분담조건으로 규정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자의 분담액은 관련보험계약중 낮은 쪽의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균등액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며 後者는 어느 한 계약이라도 균등분담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한 계약자의 혼란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국문 및 영문약관 모두 원칙적인 분담방법은 균등액분담방식으로 하고 분담방식에 대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⁸³⁾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제도는 소송사회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物賠償責任法이 도입되더라도 보험약관의 내용이나 보험조건 등에 있어서 크게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문보험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보험상품개발 측면에서는, 최근 입법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영향과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이 이에 부응하는 일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중소기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50%정도 할인된 “중소기업체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제조업체의 生産物責任對策講究를 촉진하고 그 강구비용을 일부보상하는 측면에서 優良生産物特約付 生産物保險을 도입하여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보험사들도 계약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83) 지수현, 전개서, pp.185

새로운 상품의 도입을 통하여 生産物責任法 施行에 따른 보험의 사회공기능적 역할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보험약관은 미국약관을 국문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실정에 맞도록 정상적인 번역이 되지 않은 관계로 문귀가 매우 난해하여 계약자의 이해가 곤란하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시에 보험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실정에 부합하도록 보험약관을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나. 保險料率의 整備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은 국문요율로 운영되는 종목과 재보험자 구독요율을 사용하는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1988년 7월 5일 약관개정 인가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요율이 국문요율에서 배제된 것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保險料算出 基礎가 可變의이거나 任意性이 있는 종목(매출액, 임금, 수출금액, 입장자등)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보험요율체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 분류기준에 의하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험요율체계를 갖지 못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산출 기초가 보험계약자의 연간 매출액, 수출입금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산업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위험을 보험에 부보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인 보험가격수준을 알지 못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재보험자의 구독요율이 구독국가의 사정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제시되는 관계로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가격이 매년 변동하여 계약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국내 보험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재보험자 구독요율을 사용함으로써 보험청약에서부터 보험증권발급시까지 통상 1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브로커의

도입, 再保險産業의 自由化가 실시되는 경우 국내보험사의 경쟁력은 아주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개방화·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보험요율자유화 등의 규제 완화도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요소인 요율산정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8위의 보험산업국 위상에 걸맞지 않으므로 향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요율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미국의 標準料率을 試驗料率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경험통계가 집적되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대한재보험사에 집적된 배상책임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國文料率化되어 있지 않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요율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거 10개년간 경험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계약건수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만큼 크고 사고경험도 안정적인 생산물에 대하여는 국문요율화하고, 2차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생산물에 대하여 점진적인 국내요율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과거 5년간 실제로 미루어 보면 음식물(770건, 13.8%), 전기제품(616건, 30.0%), 자동차부품(369건, 13.4%)등 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통계결과치에 불과하므로 실제 도입하는 경우에는 통계기간을 10년이상으로 하고 여러가지 사회환경 등에 비추어 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요율을 국문요율화하여야 할 것이다.

<表 IV-10> 우리나라의 생산물별 보험실적현황(FY90-94)

(단위 : 건,%,백만원)

생산물별	전체			국문약관			영문약관		
	건수	보험료	손해율	건수	보험료	손해율	건수	보험료	손해율
음식물	770	1,060	13.8	733	750	10.1	37	310	22.8
의류	166	485	51.4	10	22	0.0	156	463	53.9
기계류	235	2,953	7.7	141	399	49.0	94	2,554	1.3
보일러	230	810	81.2	230	810	81.2	0	0	0.0
의약품	103	315	5.8	98	249	7.3	5	66	0.0
곤돌라	368	1,869	87.9	367	1,865	88.1	0	0	0.0
전기제품	616	4,522	30.0	542	1,980	61.2	74	2,542	5.8
파이프	86	429	102.8	81	117	301.5	5	312	28.1
화학제품	109	305	13.6	93	214	0.7	16	90	44.2
난로	166	687	160.2	161	669	164.5	5	18	0.0
자동차, 부품	369	1,630	13.4	303	412	43.0	66	1,218	3.4
가스용품	175	1,147	50.9	173	1,105	52.9	2	42	0.0
기타	1,072	7,669	60.9	766	2,311	83.2	306	5,358	51.3
합계	4,465	23,881	47.6	3,698	10,903	72.8	767	12,973	26.4

주 : 생산물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계약실적으로 재보사 특약대상기준임(외국사제외).

자료 : 대한재보험 특중부

세번째는 生産物別로 과학적인 위험분류(risk classification)체계를 확립하고 保險開發院 등을 통해 관련통계자료를 공동으로 집적함으로써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내보험시장에 맞는 요율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準備金 積立의 體系化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입법화되는 경우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적정한 準備金 積立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80년대 미국의 파산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원인 중 하나가 long tail 보험종목의 부적절한 준비금 적립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적정준비금 적립의 충실화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⁸⁴⁾

미국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사고발생에서부터 보험금지급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과거 11년간(1975년-1985년)의 경험기간을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1년차에는 10.1%가 지급되었으며 5년차에는 64.5%, 9년차에는 96.0%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表 IV-11> 미국 Products/Completed Operations보험의 지급보험금 추이(뉴욕주)
(단위 : 달러, %)

년도 ¹⁾	지급보험금 ²⁾	1년 ³⁾	3년	5년	7년	9년
1975	12,987,334	15.3	46.1	74.3	85.7	96.6
1976	16,344,571	9.1	37.3	66.6	75.4	88.3
1977	18,574,366	10.7	43.4	64.3	80.6	95.7
1978	23,109,920	10.5	42.1	63.8	84.2	97.4
1979	37,593,214	10.6	37.8	68.3	84.3	96.0
1980	64,614,767	7.3	44.4	71.5	83.9	93.5
1981	88,938,081	7.4	31.9	56.4	68.7	94.3
1982	74,950,216	13.5	39.5	66.0	81.4	94.7
1983	88,781,588	12.6	39.2	66.6	90.2	97.7
1984	110,492,049	10.1	35.1	60.6	84.1	97.9
1985	106,613,179	8.5	39.0	65.8	84.5	97.1
평균	642,999,285	10.1	38.2	64.5	82.3	96.0

주 : 1) accident year로 뉴욕주의 BI와 PD를 포함한 실적임.

2) 사고발생후 10년까지 지급한보험금의 누적치임.

3) 사고발생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과연도임.

자료 : ISO, ISO CIRCULAR, 1996. 4. 17.

미국의 경우 Superfund법 개정논의와 고압선용 철탑, 핸드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기장(EMFs: electromagnetic fields)과 같은 새로운 대형 클레임발생이 예고되고 있어 일부 보험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Fireman's Fund사와 Aetna Life & Casualty사는 석면 및 환경오염 클레임을 지급하기 위해 準備金을 각각 7억 5천

84) 미국의 경우 RBC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준비금리스크 평가시 손해배상청구증권과 손해사고 증권으로 인수한 보험종목의 리스크를 차등적용하고 있음.

만달러를 추가로 적립하였으며, 재보험자 가운데 책임보험종목의 손해가 큰 Swiss Re. America社は 모회사의 자본투자에 의한 준비금 7억달러 추가 적립하였다. 또 Cigna社도 석면과 환경오염 클레임을 run-off 관리회사로 이전하여 준비금 10억달러 이상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⁵⁾

또한 ISO가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계약초기의 경우 準備金이 發生損害額보다 부족한 사고계약은 건수대비 87.7%, 금액대비 78.8%나 되었으며 최종 단계의 경우 준비금 부족 비율은 건수로 20.0%, 금액으로는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2> 미국의 CGL보험의 준비금조사결과(closed claims of \$75,000 or more)
(단위 : %, 백만US\$)

구분	계약초기준비금				최종준비금			
	건수비율	손해액	준비금	과부족	건수비율	손해액	준비금	과부족
준비금 > 손해액	9.5	28	40	44.7	46.8	181	256	41.4
준비금 = 손해액	2.7	14	14	0	33.2	145	145	0.0
준비금 < 손해액	87.8	369	78	-78.8	20.0	85	56	-33.9
합계	100	411	133	-67.7	100	411	458	11.3

자료 : ISO, *Closed Claim Survey for Commercial General Liability:Survey Results*(1995), 1996. 5, pp.30

유럽의 경우에는 새로운 生産物賠償責任法의 시행으로 미국과 같은 보험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의 직접비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 국민들의 법의식 등 보험산업 주변환경 자체가 너무나 相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한 인수경쟁은 피하고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 및 위험관리를 통하여 미국과 같은 보험위기상황은 사전에 방지되어야 한다.

배상책임종목에서 보험약관 형태가 손해사고증권과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대별되게 된 배경도 생산물배상책임, 환경오염배상책임, 의료과오배상책임,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과 같이 보험사의 책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준비금적립 부

85) 대한재보험, “해외보험시장 정보자료”, 1996. 3. 26, pp.1-3

즉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경우 개별추산법, IBNR인 경우 대차대조표일 직전연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미경과보험료는 1/24법)은 손해보험회계규정에 따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위시한 long tail종목에 대하여는 보험종목의 특성에 맞게 준비금적립의 충실화를 별도로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再保險去來

우리나라 원수보험사의 재보험거래는 대한재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보험수지는 최근 수년간 적자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이면 전 종목에 대해 再保險 自由化가 시행되는데, 배상책임보험과 관련지어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1994회계연도의 경우 특종보험의 재보험거래 현황을 보면, 출재비율(출재보험료/수입보험료)은 48%이고 재보험총수지차는 손해보험전체 재보험총수지차 1,662억원 적자 중 51%인 853억원의 적자를 보여 적자가 가장 많은 종목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재보험거래로 인한 회수불능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경우 일단사고가 발생하면 처리기간이 10년 정도로 다른 종목에 비해 훨씬 길고 클레임청구가 집중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보험자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담보력이 있는 해외 재보험자와의 거래선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해외보험브로커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재보험 거래방식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브로커는 해외재보험자와의 Net work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원보험자는 브로커와 재보험자를 동시에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원수보험자들이 배상책임보험종목에 대하여 보험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듯이 세계 유수의 재보험자들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1980년대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인화된 후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소송제기는 빠른 속도로 빈도와 규모면에서 커지고 있어 투자수익과 준비금 과소적립으로도 영업적자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이후 석면클레임 제기로 인하여 인수방식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데 기존에는 책임보험 전종목을 동일 특약에 포함하는 multi-line casualty programmes으로 인수했으나 최근에는 특정종목만을 담보하는 특약인수방식으로 전환되었다.

<表 IV-13> 세계 10대 재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료 (1994)

(단위 : US\$백만,%)

재보험회사	수입보험료			Best's rating
	종목전체	배상책임	점유비	
Munich Re.	9,966	1,382	13.9	A+
Swiss Re.	8,230	N.A	-	A+
General Re.	5,551	N.A	-	A++
Employers Re.	3,484	23	0.7	A++
Assicurazioni Generali	3,257	1,410	43.3	A
Hannover Re/Eisen und Stahl Re.	3,097	461	14.9	A+
Gerling Global Re.	1,976	413	20.9	A ¹⁾
Mercantile &General Re.	1,936	N.A	-	A-
Frankona Re.	1,851	280	15.1	A
Scor SA	1,797	3 ²⁾	0.2	A
합 계	41,147	3,950	9.6	

주 : 1) 신용등급은 미국지회사의 등급임.

2) 캐나다와 호주 자회사의 실적임.

자료 : A.M. best

마. 언더라이팅의 전문화

1) 언더라이팅 가이드작성 전문언더라이터 양성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담보지역의 법적, 사회적 환경을 모르고는 보험을 판매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또한 우리나라의 保險環境도 開放化 내지는 國際化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보험사들은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미개척분야에 대한 언더라이팅 능력을 보험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외국의 어떤 언더라이터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공통의 적정 요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분야 중 再保險者 求得料率만을 사용하던 종목에 대한 보험요율체계구축과 더불어서 외국의 보험자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구분별 언더라이팅 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분야별 전문언더라이터를 질적·양적으로 양성하여 미래의 배상책임보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製造業者에 대한 危險管理提供

작년에 生産物賠償責任法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보험업계는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生産物책임대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험인수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의 위험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企業性 財物保險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을 뿐 배상책임보험분야와 같은 잠재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탈피하여 기업의 모든 위험을 분석평가하여 리스크 통제와 財務對策까지를 포함하는 Total Risk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生産物賠償責任法은 자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배상책임에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生産物責任에는 기업의 생존여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生産物責任法의 입법 초기에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서비스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리스크관리비용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험료비용에 있어서는 배상책임보험이 0.145%로 가장 높고 재물보험이 0.075%로 가장 낮다. 또한 발생된 손해액중 기업의 자기부담금 또는 보상한도액 등으로 인한 보유손해액의 비율을 보면 근재보험이 0.204%, 배상책임보험이 0.122%, 재물보험 0.054%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보면 소규모기업일수록 리스크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表 IV-14> 1994년도 기업규모별 리스크관리비용 구성

총수익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기타 비용 ¹⁾	리스크 비용	조사 기업수
	보험료	보유손해액	보험료	보유손해액	보험료	보유손해액			
1억미만	0.403%	0.048%	0.750%	0.274%	0.634%	0.390%	0.327%	2.825%	76
1억~5억	0.146%	0.038%	0.339%	0.200%	0.250%	0.313%	0.126%	1.411%	186
5억~10억	0.116%	0.057%	0.261%	0.141%	0.125%	0.228%	0.077%	1.005%	85
10억~50억	0.094%	0.089%	0.173%	0.166%	0.074%	0.248%	0.042%	0.884%	176
50억이상	0.052%	0.035%	0.096%	0.086%	0.079%	0.163%	0.014%	0.525%	46
합계	0.075%	0.054%	0.145%	0.122%	0.090%	0.204%	0.034%	0.726%	569

자료 :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Inc., *Cost of Risk Survey 1995*, Tillingast, 1995.
pp.46

이 결과는 물론 미국의 조사결과이지만 일정부분은 우리나라에 참고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생산물책임대책의 중심이 되는 예방대책인 생산물배상책임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생산물배상책임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ce)을 포함한 리스크관리 서비스체제를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행되기 전에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保險運營관련 國家別 資料의 DB構築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특징 중 하나가 long tail보험이라는 사실에서 80년대 중반 미국의 보험위기가 발생하였고 담보기준을 변경하는 약관개정도 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보험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는 국가별 책임법리, 소송절차 및 특징

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특히 陪審員制度와 변호사의 成功報酬制度, 懲罰的 賠償金支給 등이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를 잘 알아 두어야 한다. 미국은 生産物賠償責任法이 州別 判例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生産物責任負擔에 있어 州間 큰 차이가 있다(부록 1참조).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소송의 평균배상액에 대한 평균지출비용 비율을 비교한 <表 IV-15>를 살펴보면, 신체손해의 경우 34.7%, 재산손해 47.7%로 매우 높으며 특히 신체사고의 경우 평균배상액 구간이 4000달러 미만과 15000달러미만 구간에서는 평균비용이 평균배상액을 초과하고 있다.

<表 IV-15>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평균처리비용

(단위 : \$, %)

구간	신체손해			재산손해		
	평균배상액	평균비용	비용비율	평균배상액	평균비용	비용비율
1,001~ 2,000	250	145	58.0	279	80	28.7
1,001~ 2,000	1,506	1,486	98.6	1,418	1,255	88.5
2,001~ 3,000	2,495	1,952	78.2	2,505	1,835	73.2
3,001~ 4,000	3,517	4,028	114.5	3,517	2,062	58.6
4,001~ 5,000	4,687	2,717	57.9	4,518	1,693	37.4
5,001~ 7,500	6,283	5,067	80.6	6,158	3,125	50.7
7,501~10,000	8,779	5,370	61.1	8,582	1,884	21.9
10,001~15,000	12,641	13,062	103.3	11,951	3,358	28.1
15,001~20,000	17,755	8,397	47.2	17,270	5,063	29.3
20,001~25,000	23,136	21,688	93.7	22,260	10,989	49.3
25,001~50,000	35,764	13,159	36.7	35,168	10,819	30.7
50,001~100,000	70,684	26,074	36.8	70,946	12,764	17.9
100,000~	379,911	40,909	10.7	242,075	78,084	32.2
합계	10,123	3,502	34.5	2,531	1,208	47.7

주: 1)비용은 계약자 및 보험자의 내부비용이 아닌 외부비용을 의미함.

자료: The Cologne Re., *op.cit.*, pp.52-53

또한 배상처리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판결전 단계까지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를 초과하며 이 중 변호사 비용은 대인배상의 경우 83.8%, 대물배상의 경우 84.5%이다.

<表 IV-16> 미국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배상처리단계별 비용
(단위 : \$, %)

처리단계별	대인배상				대물배상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총비용	비율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총비용	비율
법적 처리전 비용	13	12	25	52.0	7	14	21	33.3
소송전법적처리비용	8,083	1,276	9,359	86.4	4,001	746	4,747	84.3
판결전 소송비용	15,050	5,337	20,387	73.8	11,894	1,904	13,798	86.2
판결후의 비용	19,696	5,078	24,774	79.5	10,653	1,585	12,238	87.0
중재후의 비용	739	129	868	85.1	139	22	161	86.3
합계	2,965	593	3,558	83.3	1,016	186	1,202	84.5

주: 1)비용은 계약자 및 보험자의 내부비용이 아닌 외부비용을 의미함.
자료: The Cologne Re., *op.cit.*, pp.52-53

한편, 책임법리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결합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state of the art(development risk), assumption of risk, state of repose, misuse, joint and several liability도입, 피해자의 과실인정여부,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를 배상액에 포함시킬지의 여부, 배상한도액 설정여부 등에 있어서도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세계 국가와 국제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체와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DB구축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生産物賠償責任法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언더라이팅은 물론 損害査定業務에 필수적인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表 IV-17> 우리나라의 수출입현황(1995)

(단위 : 백만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국명	금액	비중	국명	금액	비중
1	미국	24,131	19.3	일본	32,606	24.1
2	일본	17,049	13.6	미국	30,404	22.5
3	중국	9,144	7.3	중국	7,401	5.5
4	싱가폴	6,689	5.3	독일	6,583	4.9
5	독일	5,965	4.8	사우디	5,432	4.0
6	대만	3,882	3.1	호주	4,897	3.6
7	인도	2,958	2.4	인도	3,325	2.5
8	말레이시아	2,951	2.4	캐나다	2,604	1.9
9	영국	2,874	2.3	대만	2,564	1.9
10	태국	2,428	1.9	말레이시아	2,515	1.9
	계	78,071	62.4	계	98,331	72.8
	기타국가	46,987	37.6	기타국가	36,788	27.2
	합계	125,058	100.0	합계	135,119	100.0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1996년3월호, pp.35

V. 結 論

현대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생산물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신체적장해와 재산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嚴格責任法理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를 기하고 있다. 미국은 1963년에 최초로 嚴格責任法理를 근간으로 하는 生産物賠償責任法을 施行하고 있으며 세계주요국의 법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1987년에 제정된 EC의 생산물책임지침에 의하여 각 국가별로 생산물책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1995년 7월부터 嚴格責任法理를 채택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아래 우리나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생산물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해 缺陷有無와 사고와 결함과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물책임은 제조자의 다른 경영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생산물책임리스크에 대해 제조업자 등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수출제품에 대하여 바이어나 중개상들의 요구에 따라 보험부보를 하고 있으며 이것도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에 제한되어 있어 연간보험료 94억원, 가입율 0.7%(제조업체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보아도 생산물보험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산물배상책임법의 입법화를 보험제도상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생산물책임법이 입법화되면 생산물책임부담자의 범위는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 주문자생산자 등 제품에 관여한 대부분의 者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수요의 잠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收入保險料는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러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화시키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과제가 있다.

첫째,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점은 保險料率體系의 確立이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요율체계 개선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재보험자 구득요율로 존속시켜 놓았으나 향후 再保險去來의 自由化, 保險價格 自由化가 완료된다면 독자적인 요율체계가 없는 국내원보험사의 경쟁력 약화는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따라서 각 보험사와 재보험사, 보험개발원이 협력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요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험개발원 비산정대상종목의 통계자료 집적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요증가에 더불어 계약자의 니드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경비부담측면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은 中小企業用 生産物保險의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품질 인증마크 부착제품 등의 인증기관을 통한 보험가입방법 개선과 적절한 상품의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보험사의 적정한 準備金 積立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1985년 보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long tail인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부적절한 준비금 적립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손해보험의 준비금적립방식에 있어서 생산물배상책임을 위시한 long tail종목에 대하여는 보험종목의 특성에 맞게 준비금 적립의 충실화를 별도로 제고해야 된다.

넷째, 再保險去來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1994년도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특종보험은 다른 종목보다 출재비율이 높고, 재보험 총수지차도 853억 적자로 손해보험전체 적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7년에 이루어질 재보험거래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재보험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고 재보험금 회수불능리스크의 경감, 재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팅의 專門化이다.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국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담보지역의 법적·사회적 환경을 모르고는 보험을 판매하기 힘들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보험사들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미개척분야에 대한 언더라이팅 능력을 보험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험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

- 강창경, “제조물책임제도와 리콜제도”,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임심포지엄, 1996. 6. 20.
- 권용우, 「불법행위론」, 고시원, 1974.
- 김 현, 「미국의 製造物責任任法 解説」, 「손해보험」, 1995. 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제조물책임법 이렇게 대응하라」, 1995.
-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製造物責任法理 現況」, 1993. 9.
- _____,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 1995. 2.
- 이상정·황유인, 「소비자보호법」, 대학출판사, 1993.
-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5. 4.
- _____, “製造物責任의 立法과 保險의 義務化 問題”, 「손해보험」, 1995. 3.
- 한국법제연구회,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1994.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1994.
- _____, 「'95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조사」, 1996. 4.
- 황철홍, “제조물책임법의 입안과 그대응방안 연구”, 「보험개발연구 1990. 제2호」, 보험개발원, 1990, pp.127.
- The Tokyo Marine Research Institute, 「Product Liability Law Liability Insurance」, 損保學雜誌 제549호, 1995.
-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製造物責任制度導入の影響・歐州調査報告」, 東京:大藏省印刷局, 1993.
-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第1果編, 「製造物責任制度を中心とした總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済の在り方について(II)」, 東京:大藏省印刷局, 1994.
- 大羽寫一, 「米國の製造物責任と懲罰賠償」, 日本經濟新聞社, 1991.
- 落合誠一, “PL保險の現想と課題”, 「保險學雜誌 第540號」, 1994. 3, pp.70.
- 三井海上(株), 「新種保險論」, 損害保險總合研究所, 1994, pp.106-112.
- 小西一生, 「PL對策のすべて」 東京:中經出版, 1994.
- 安田總合研究所, 「製造物責任」, 有斐閣, 1994.
- 安田總合研究所, 「製造物責任對策」, 東京 :有斐閣, 1994.
- 林田 學, 「製造物責任の實務對策」, 中經出版, 1994.
- 長谷川洋, 「ホーム オートメシヨンの製造物責任」, 東京 : 未來工學研究所, 1995. 1.

- 田中 誠二, 「製造物責任法の研究」, 經濟法令研究會, 1995.
- Colin Camerer, Howard Kunreuther, "Making decisions about Liability and Insurance : Editors' Comment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 7 No.1, 1993. 8.
-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 Digghy C. Jess, *The Insurance of Commercial Risks Law and Practice, 2nd Ed.*, London, 1993.
- Eril Stenberg, *Products Liability for US Exports*, Swiss Re, 1992.
- ISO, *CIRCULAR(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COVERAGE FORM)*, 1995.
- _____, *Closed Claim Survey for Commercial General Liability:Survey Results(1995)*, 1996. 5.
- Joan Schmit, "The Role of the Work Place, Business Paintiffs, abd Mass Torts in Product Kiability Kitigation", *Journal of Insurance and Regulation*, Vol.12. No. 4, spring 1994.
- Larry D. Gaunt 외 3인, *Commercial Liability Underwriting Vol. I*,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90.
-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Inc., *Cost of Risk Survey 1995*, Tillingast, 1995.
- The Cologne Re., *Product Kiability for Exports to the USA and its Insurance*.
- William J. Warfel, "Expension of the Long-Tail Product Liability Exposure-Insurance Price /Availabi;lity Implications", *Journal of Insurance and Regulation*, Vol.11, No.3, sp-ring 1993.
- W.Kip Viscusi, Richard J. Zeckhauser, Patricia Born, Glenn Blackmon, "The Effect of 1980s Tort Reform Legislation on General Liability and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6, No.2, 1993. 4.

< 附 錄 >

1. 美國의 不法行爲 關聯 立法現況(1996년 5월 현재)

주별	연대책임적용	Collateral Source Rule	배상손해		제조물책임
			비경제적손해	징벌적배상	
알라바마		E	Med*	H*, I*	
알래스카	A	E,F	H	I	
아리조나	B	E		D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C			I,K	N
콜로라도	C	E,F	H	J, L35%	N
코네티컷	D	E,F			
델라웨어					N
플로리다	C	F	G*	I, J, L 35%	N
조지아	D	E*	H	H, L 75%	N
하와이	C	D	G		
아이다	C	E,F	G	I	
일리노이	C	F		I,J,K,L	M,N
인디애나	D	E		G,J,L 75%	M,N
아이오와	B	E		I,L75%	M,N
칸사스		D*	H	H,I	M,N
켄터키	D	E*		I	
루이지애나	A			C	M,N
매인					
매릴랜드			G**		
매사추세츠					
미시건	C	E,F	Med		M
미네소타	D	E,F	H	I,K	
미시시피	D			I,K,J	N
미주리	D	E	Med	K,L50%	M,N
몬타나	B	E,F	Med	I,K	N
네브라스카	C				
네바다	C			H,I,J,K	
뉴햄프셔	B		G*	A	M
뉴저지	D	F		H,I,J,K	M,N
뉴멕시코	D				N
뉴욕	B,C	F		L20%	
노스캐롤라이나				G,I,J,K	N
노스다코타	C	F	Med	I,J,K	N

주별	연대책임 적용	Collateral Source Rule	배상손해		제조물책임
			비경제적손해	징벌적배상	
오하이오	C	F*	Med*	I	M,N
오클라호마				H,I,J,K,N	
오레곤	C	F	G	I,L 60%,N	N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I	
사우스다코타	D			I	
테네시					M
텍사스	B			H,I,J,K	M,N
유타	A			I,K,L50%	N
버몬트	A				
버지니아				G	
워싱턴	C		H*		N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B		Med	I	
와이오밍	A				
전체	35	19	11	27	25

주 : 1)*: 주의 대법원에서 불채택하거나 동일, **: 주의 대법원에서 수정하거나 동일.

2) Med:의료과오경우만 적용

3)A : 전체적으로 금지 또는 폐지

B : 가해자가 50%과실이하인 경우 폐지

C : 여러 가지 경우의예외규정을 폐지

D : 적용의 제한을 가함

E : 증거로 허용

F : 차감조항

G : 예외조항없는 상한

H : 약간의 예외를 둔 상한

I : 징벌적손해를 지급후기전에 특정화된 행동의 표준이 입증되어야 함

J : 지급액이 보상받는손해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함

K : 소송의 분기가능(배상책임규명과 배상액결정을 분리소송가능)

L : 모든 징벌적배상액의 일정비율 혹은 법원이 판단한 금액은 주의 기금으로 적립

M : State-of-the-art 방어 채용

N : 기타수정

자료 ; The American Tort Reform Association,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 日本 中小企業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保險料率

업종	세부업종	A형	B형	C형
		LOL: 1억엔	LOL:2억엔	LOL:3억엔
제조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제조	111	144	168
	가공식품,조미료제조	766	1,022	1,210
	乳제품제조	220	294	349
	냉동식품,인스턴트식품제조	486	643	758
	과자류제조	315	416	491
	병 음료제조	1,056	1,422	1,692
	캔 음료제조	403	539	639
	기타 식품제조	336	441	518
	비누세제 제조	603	785	919
	비료제조	296	363	411
	유리도자기제조	172	226	266
	건축자재제조	163	200	227
	가정용전기기계기구제조(신체접촉하는 것)	1,217	1,584	1,852
	가정용전기기계기구제조(신체접촉하지 않는 것)	531	660	751
	가정용전동용구제조	755	961	1,110
	가정용가스,석유기기제조	1,973	2,375	2,654
	업무용냉난방장치,환기장치제조(전기이용)	333	409	463
	업무용냉난방장치,환기장치제조(석유,LPG 이용)	1,182	1,470	1,675
	모타보트,골프카드,스노우모빌등 탑승용구 제조	1,246	1,662	1,969
	사무용기기제조	583	777	921
	안경제조	518	687	811
	칼,목공도구등 제조	600	775	903
	운동용구제조	1,062	1,421	1,686
	완구기타 가정용 유희구제조	583	777	921
	가구제조	132	171	199
	섬유의료품제조	95	123	144
	피혁제품제조	265	352	416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	42	52	59
판매업	13개 분류	87-3,090	111-3,916	129-4,512
공사하 청업	13개 분류	537-10,953	680-12,964	782-14,333

주 : 보험료는 매출액 100만엔당임.

자료 : 중소기업生産物책임제조대책협의회, “중소기업PL제도”, 1995. 3